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692-01



>>> 업무편람

2010. 1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농림수산물자료실



0000570



농림수산물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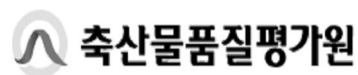
국립수의과학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 Quarantine Service



축산물품질평가원

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편람 (수입산·국내산쇠고기)

2010. 12.



Contents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편람

제1장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 3

1. 이력관리 정의	5
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5
3. 도입 배경	6
4. 추진경과	7
5. 기대효과	8

제2장 수입쇠고기 관리체계 및 유통이력제 현황 / 9

1. 적용 대상 영업자 현황	11
2. 영업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제3장 대상 업무별 세부 매뉴얼 / 15

1. 쇠고기수입업자	17
2.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18
3. 거래신고 제외 식육포장처리업자	18
4. 거래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19
5. 거래신고 제외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24

제4장 영업자별 업무 질의·응답 / 45

- 1. 쇠고기수입업자 46
- 2. 식육포장처리업자 52
- 3.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65

제5장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편람 / 61

- 1.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63
- 2.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69
- 3. 수입매출 79
- 4. 거래내역(매입) 93
- 5. 거래내역(매출) 119
- 6. 재고 관리 134
- 7. 식육포장 143
- 8. 기준정보 162

제6장 시스템 질의·응답 / 167

- 1. 회원가입 169
- 2. 쇠고기수입업자 175
- 3. 식육포장처리업자 178
- 4.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 19

제7장 참고 자료 / 183

-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흐름도 8
-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사무연락처 8
- 3.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도 18
-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단체·연락처 9

❖ 국내산쇠고기 이력제 업무편람

제1장 국내산쇠고기 이력제 추진현황 / 197

- 1. 추진 경과 199
- 2. 추진체계 200
- 3. 기관별 역할 202

제2장 단계별 업무 매뉴얼 / 203

- 1. 사육단계 204
- 2. 도축단계 213
- 3. 포장처리단계 219
- 4. 판매단계 222
- 5. 위반시 조치 226

제3장 DNA동일성 검사 / 227

- 1. 검사 추진체계 229
- 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2

❖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235

-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932
-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3
-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
- 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서식 8

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편람
(수입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편람

제 1 장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1. 이력관리 정의
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3. 도입 배경
4. 추진경과
5. 기대효과

1 이력관리 정의

-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력관리의 장점

- 동물 질병에 의한 사회적 및 재정적 피해 최소화
- 유통 중인 위해축산식품의 신속한 제거

□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한 조건

- 제품 식별 단위의 존재(라벨, 귀표 등)
- 제품 식별은 정확하고 기록이 가능
- 신속한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바코드와 호환성 있는 스캐닝 등)

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의의

- 수입쇠고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유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수입쇠고기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 대상품목

○ 수입쇠고기 식육(지육·정육·내장·뼈 등) 및 포장육

※ 단, 수입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등) 등은 제외

□ 시행일 : 2010년 12월 22일

○ 시행 후 최초로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쇠고기부터 적용

□ 제도 이행자

○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를 취급·거래하는 모든 영업자

- 쇠고기수입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3 도입 배경

□ 국제교역의 증가로 위해(危害) 수입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유사시 국내에 유통 중인 축산물 회수(recall)체계 강화 필요

- BSE 우려, 학교급식, 납꽃게, 멜라민 과동 등 식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패닉 야기 가능성 존재
- 수입쇠고기의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관리, 위해 수입쇠고기의 즉각적 회수 시스템 구축
- 회수대상 수입쇠고기가 매장 계산대 등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계산 거부

□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시행과 더불어 소비자 안심도 제고를 위하여 수입쇠
고기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도입 근거 마련

○ 수입쇠고기 허위표시(한우로 둔갑) 등의 우려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

4 추진경과

□ 「식품안전종합대책」(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08.7.11. 발표)에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관리체계 정비 대책 수립

○ 1단계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08.12.22)

○ 2단계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도입('10.12)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08.12월)

○ 유통경로 관리에 필요한 선하증권번호(B/L번호)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 발급, 거래
내역서류 작성·보관 및 B/L번호 표시판매 의무화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발('09.8.~'10.03월)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0.05.25.)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시행일 : 2010.12.2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0.12.22.)

5 기대효과

□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 구현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 수입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원산지 둔갑을 억제함으로써 안심 먹을거리 제공

□ 수입쇠고기 유통 경로 및 거래 투명성 확보

- u-IT기술을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경로 정보 수집 체계 마련
- 수입쇠고기의 검역·보관·가공·판매·회수 등 각 단계별 유통 경로 파악

□ 위해 수입쇠고기 차단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판매 단계에서 위해쇠고기에 대한 계산 거부 및 판매 차단
- 위해 쇠고기 발생 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에 의한 신속한 회수

제 2 장

수입쇠고기 관리체계 및 유통이력제 현황

1. 적용 대상 영업자 현황
2. 영업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적용 대상 영업자 현황

□ 제도 이행 대상자

구분	쇠고기 수입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부산물) 판매업소	계
대상 업소(개소)	400	2,757	49,403	52,560
전자적 거래신고	400	1,081	4,311	5,792
거래신고 외 (수기장부 기재·보관)	-	1,676	45,092	46,768

○ 거래신고 대상(전자적 거래신고)

- 쇠고기 수입업소·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소

○ 거래신고 외(수기장부 기재·보관)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제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소

2 영업자의 범위 및 준수사항

가. 거래신고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쇠고기수입업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②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단계별 적용】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비 고
종업원 10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2010.12.22.	
종업원 5~9명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2011.12.22	

③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 중인 자
-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겸업하여 운영 중인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

【단계별 적용】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비 고
종업원 10인 이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겸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 판매업	2010.12.22.	
종업원 5~9명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겸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 판매업	2011.12.22	

- 그 밖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나. 영업자별 준수사항 요약표

영업자 준수사항	최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 및 식육 부산물 판매업자		비고
		신고대상	신고대상 외	신고대상	신고대상 외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 (수입신고 이전에 신청)	전자적으로 처리	N/A	N/A	N/A	N/A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수입신고 이전에 부착)	현물에 부착	N/A	N/A	N/A	N/A	
수입신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신고)	수입신고	N/A	N/A	N/A	N/A	
변경신고서 제출 (수입유통관리 대장의 기록 변경, 누락, 오류 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거래내역(양수)	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적으로 처리)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으로 처리)	거래즉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내역서(매입)로 처리]	거래즉시	
거래내역서(양도)	양도일로부터 3일 이내 전자적처리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적처리 (*수입유통 식별최고기포장처리 판매실적으로 처리)	거래즉시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전자적처리 (*수입유통판매실적 으로 처리)	거래즉시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전자적 처리	N/A	N/A	N/A	N/A	
거래내역서(매입)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	-	-	-	전자적 처리	장부관리 (전자적처리 포함)	
판매·반출 실적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	N/A	전자적 처리	장부관리 (전자적 처리 포함)	전자적 처리	장부관리 (전자적처리 포함)	
수입유통최고기 포장처리 실적 (최종기제일로부터 2년간 보관)	N/A	전자적처리	장부관리 (전자적 처리 포함)	N/A	N/A	
수입유통식별최고기 포장처리 판매실적 (최종기제일로부터 2년간보관)	N/A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장부관리 (전자적 처리 포함)	거래즉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장부관리 (전자적 처리 포함)	거래즉시	
식육의 판매 표시판 등에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N/A	표시	표시	표시	표시	
묶음번호 표시	N/A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교부	교부	교부	교부	교부	*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제 3 장

대상 업무별 세부 매뉴얼

1. 쇠고기수입업자
2.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3. 거래신고 제외 식육포장처리업자
4. 거래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5. 거래신고 제외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쇠고기수입업자

①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발급



※ 수입유통식별번호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번호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후 발급
- 신청발급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meatwatch.go.kr>)
- 관세청 통관단일화창구(Uni-Pass)(<http://portal.customs.go.kr>)

②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 발급받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글표시사항(스티커)에 포함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③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수입쇠고기(정·지육 및 부산물)

- 발행한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유통식별쇠고기 현물에 부착

④ 수입신고

⑤

거래(양도)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⑥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영업자간 거래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 신청

①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 신청

-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쇠고기 수입업자는 <별지 제11호 서식>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 신청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으로 신청
- 발급 신청자
 - 쇠고기수입업자(수입신고대행업 영업자 포함)
 - 식육포장처리업자(포장육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제조 원료용으로 수입)

② 신청 내용

신청인	1.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3.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7. 팩스번호	2. 주민등록번호 4. 소재지 6. 영업신고(허가)번호 8. 업종
검사(반입)장소	1.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1. 한글명 3. 포장수량	2. 영문명 4. 순무게
부위	1. 부위명 3. 부위별 무게	2. 부위별 수량
수입내역	1. 화물관리번호 3. 생산국	2. 선하증권번호(B/L No)

③ 신청 시기

-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발급을 신청

④ 신청 방법

- 관세청 통관단일화창구(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meatwatch.go.kr>)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가능

⑤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통보

- 쇠고기수입업자로부터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12자리로 구성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수입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보

TIP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기준(단위)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기준(단위)

검역원 검역검사정보시스템에서 분류되어 있는 품명코드 단위로 신청

예) 뼈있는 냉동쇠고기(Frozen Bone-In Beef), 뼈 없는 냉장쇠고기(Chilled Bone-Less Beef), 냉동소족(Frozen Beef Feet) 등

- 현행 검역원 수입신고 단위로서, 이 단위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있음
- 부위별(안심, 등심 등)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수입유통식별번호 코드 체계

- 수입업자코드(4자리), 원산지코드(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5자리), 체크코드(1자리)
-

나.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착

TIP

수입유통식별표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① 부착 대상

○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수입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입신고 대행업소(관세사무소 등) 및 쇠고기 수입업자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검역시행장(수입식육축산물전용보관)에서 쇠고기수입업자의 부착 의뢰에 따라 부착할 수 있음
- 수입유통식별표는 쇠고기수입업자가 자체 제작(인쇄 의뢰 등)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검역시행장에 보급된 라벨출력기에 의한 출력 후 부착 할 수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표시기준)에 의한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② 부착 시기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한 후 축산물 수입신고

③ 부착방법

-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입쇠고기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함
-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은 가리지 않도록 부착.
- 당초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수입유통식별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원장의 승인 후 수정 가능

한글 표시 사항

1. 제품명: 냉동쇠고기
(Chilled Bone-less Beef)

2.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수입쇠고기(등심)

3. 영업자의 명칭(상호) 소재지: (주)엔에이치프라임미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0-3 대림아크로텔 803호 TEL: 02-554-6062

4. 제조년월일: 포장측면에 별도표기(읽는방법: 년/월/일)

5.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6. 내용량: 포장측면에 별도표기

7. 원재료명 및 함량: 쇠고기 100%

8. 반품 및 교환장소: 판매처 및 2. 영업장

9. 주의사항: 본 제품은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후 재냉동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

10. 보관방법: -18℃ 이하 냉동보관

11. 조리시의 해동방법: 전자레인지 및 실온으로 해동

12. 포장재질: 겉포장: 종이/속포장:LDPE

13. 수입유통식별번호: 808103164851



분리배출



○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유통식별번호와 바코드를 동시에 표시.

④ 표시·규격

○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다. 수입신고

① 신고자

○ 쇠고기수입업자 또는 수입신고 업무 대행자(관세사무소 등)

② 신고시기

○ 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절차 완료 전에 실시

④ 신고방법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을 신고
-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호 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를 서면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마. 거래내역서 기록·관리

-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 ※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거래내역(매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서식(별지 제39호)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별도의 수기장부를 기록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음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

[]양도 []양수 []수출

※아래 및 뒷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 란은 양도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0”표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 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뒷면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수입유통식별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 갈비, 목살, 제4위·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와 kg(또는 t(톤))단위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①	거래내역(매입)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②	포장처리실적 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하는 경우 포장처리 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신고	
③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판매
<p>※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여러개의 서로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묶음번호 사용 가능</p>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포장지 등에 해당 수입유통 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④	거래내역(매출)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후 판매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⑤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영업자간 거래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가. 거래내역(매입)신고

① 신고대상

-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한다.

② 신고기한

-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③ 신고내용

신청항목	신고 내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양도·양수)	1. 거래일자 2. 수입유통식별번호 3. 부위 4. 수량 5. 중량

④ 신고방법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신고
- 수입이력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나. 포장처리실적 신고

-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포장처리실적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신고
-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4호서식>를 서면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

※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①포장 처리일	②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원료 또는 부위명	④무게 (kg, t)	⑤매입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포장처리일은 매입한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 또는 부분육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처는 쇠고기를 구입하였거나 포장을 의뢰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묶음번호구성 및 내역관리

○ 묶음번호 표시 및 구성

-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전부 또는 묶음번호로 표시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구성
-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 불가
- 원산지가 동일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를 구성

○ 묶음번호 체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합계
길이	1	2	10	3	6	2	24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번호	변동	변동	변동	

- 구분코드는 고정 값으로 '41'을 표기
- 영업자코드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 숫자만 표기
-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0'으로 표기
-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2자리, 일자 2자리로 표기
-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자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
 -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묶음번호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묶음번호	③ 부위명	④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⑤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유의사항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사용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묶음번호는 별표 7 또는 별표 12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③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④ 개체식별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쇠고기에 해당되는 모든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⑤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 "5"로 적습니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다.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판매

-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
-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묶음번호 사용이 가능

라. 거래내역(매출)신고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부터 5일 이내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입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서식에 거래일별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13호서식>의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서식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

① 교부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②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3 거래신고 제외 식육포장처리업자

가. 거래내역 및 포장처리 실적 기록·보관

- 일정규모 이하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하거나 식육포장처리하거나 제조한 포장육을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기록·보관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작성·보관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후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

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판매

-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
-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
-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묶음번호 사용이 가능

다. 거래명세서 등 교부

① 교부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②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①판매· 반출일	②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원료 또는 부위명	④판매량 (kg, t)	⑤판매·반출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판매·반출일은 해당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반출처는 해당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거래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①	거래내역(매입)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②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판매
<p>※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여러개의 서로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묶음번호 사용 가능</p> <p>○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 표시판 또는 라벨지 등에 해당 수입유통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p>	
③	거래내역(매출)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반출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	
④	거래명세서 등 교부
○ 영업자간 거래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가. 거래내역(매입)신고

① 신고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또는 영업자에게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거래내역(매입) 신고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매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②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③ 신고내용

신청항목	신고 내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양도·양수)	1. 거래일자 2. 수입유통식별번호 3. 부위 4. 수량 5. 중량

④ 신고방법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신고
- 수입이력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다.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판매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비닐 포장된 라벨용지 등에 표시
- 서로 다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

라. 거래내역(매출)신고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영업자에게 판매·반출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신고
 - ※ 영업자의 범위 :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식품접객업의 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마. 거래명세서 등 교부

① 교부내용

-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②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5 거래신고 제외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가. 거래내역 기록 관리

- 일정규모 이하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기록·보관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관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쇠고기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자별로 기록·관리

나. 수입유통식별호 표시·판매

-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 판매표시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
- 서로 다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하나의 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

다. 거래명세서 등 교부

① 교부내용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

②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거 래 연월일	식육·포 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 식별번호)	매입처 ()

※ 적는 요령

- ①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적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젓소 중 해당되는 사항을 ()안에 함께 적는다.
- ② 물량(kg)은 구입한 무게를 적으며 닭·오리의 경우 마리수(마리당 무게포함)로 적을 수 있다.
- ③ 원산지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수입의 경우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다만,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도축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적되 ()안에 수출국을 함께 적는다.
- ④ 부위명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다.
- ⑤ 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표시 대상 식육의 부위에 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1+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적는다.
- ⑥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번호를 적는다.
- ⑦ 매입처는 해당 판매업소에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한 업소의 명칭을 적고, ()안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적는다.
- ⑧ 식용하는 부산물의 경우에는 거래연월일, 식육의 종류·물량·도축장명·원산지·매입처를 적는다.

제 4 장

영업자별 업무 질의·응답

1. 쇠고기수입업자
2. 식육포장처리업자
3.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쇠고기수입업자

• Question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와 관련 법률명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법률명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인터넷으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로 가셔서 법령정보 창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수입신고 이후에도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이 신청 가능합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 이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이후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Question •

수입쇠고기를 가공한 양념육 및 갈비가공품 등을 수입하고 있는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경우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을 받아야 되나요?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적용 대상은 수입쇠고기 부산물을 포함하여 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등이며, 수입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예: 양념육·햄·소시지·분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 등) 제품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Question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금년 1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 시행 이전에 수입되었던 재고 물량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발급이 가능한지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는 금년 12월 22일부터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발급 받아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신고 이전에만 발급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신고 이후에 있는 수입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Question •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와 수입유통식별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는 없는지?

.....Answer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로 기재하여 수입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하며, 그 수입유통식별표는 반드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포함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와 수입유통식별표를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면서 그 수입유통식별번호에 해당되는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Answer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포함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수입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하므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는 반드시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그에 해당되는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

그러면 바코드는 어떻게 생성되니까?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 후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시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단위가 품목코드 단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품목이 부위 즉 안심, 등심 등을 말하는 것인지?

.....Answer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단위인 품목코드는 검역원 검역검사정보시스템에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발급 단위입니다. 부위 단위는 아닙니다.

• Question •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거래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래내역을 수기 장부로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지?

.....Answer

수입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쇠고기를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신고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자 별로 구분하여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에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쇠고기수입업자간 수입이력시스템으로 거래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위 서식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보관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수기 장부로 작성하여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Answer

○ 쇠고기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

○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수입이력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

< 신청·발급 >

-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meatwatch.go.kr>)
- 관세청 통관단일화창구(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다만,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Answer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쇠고기 수입신고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Question •

축산물(수입쇠고기) 수입신고 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Answer

쇠고기 수입업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쇠고기 수입고기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축산물수입신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nswer

쇠고기 수입업자코드(4자리), 원산지코드(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5자리), 체크코드(1자리) 등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시기는 언제입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표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한 후 축산물 수입신고 실시

• Question •

쇠고기 수입업자는 언제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이행해야 합니까?

.....Answer

2010.12.22.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실시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실수로 잘못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로 수입유통식별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원장의 승인 후 수정이 가능

————— < 수입유통관리대장 변경신고 > —————

- 쇠고기수입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별지 제 5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변경신고

• Question •

수입쇠고기 거래(양도)신고는 며칠이내에 신고해야 합니까?

.....Answer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하는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Question •

수입업체 자체시스템과 거래내역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 수입업체 자체전산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수입업체 자체보유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수입쇠고기 양도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되는 웹서비스기능을 이용한 연계를 통해 거래내역 신고

※ 웹서비스 : www.meatwatch.go.kr의 오픈서비스 내용 참조

• Question •

쇠고기수입업자 거래내역을 엑셀파일 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 수입이력시스템 규정된 형식(엑셀파일)에 의한 일괄 업로드

- 사전에 규정된 형식으로 양도 거래내역을 작성 후 수입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 제13조제3항과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미부착 및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 제1호 : 수출
 - 제2호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 제4호 :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3.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식육포장처리업자

• Question •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입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축업의 시설과 일체를 이루거나 연접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
2. 전년도 평균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

이 중에서 종업원 5~9명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11.12.22일부터 거래신고 대상이며, 종업원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10.12.22일부터 거래신고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거래신고를 며칠이내에 해야 합니까?

.....Answer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한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 실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수입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쇠고기 포장 처리실적을 자체 장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거래(양수)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Answer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입 이력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수입이력시스템 등록방법 > ————

- **수입이력시스템에 직접입력**
 -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양도 거래내역을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atwatch.go.kr>)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 **자체전산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식육포장처리업체 자체보유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수입쇠고기 양수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되는 웹서비스기능을 이용한 연계를 통해 거래내역 신고
 - ※ 웹서비스 : www.meatwatch.go.kr의 오픈서비스 내용 참조
- **수입이력시스템 규정된 형식(엑셀파일)에 의한 일괄 업로드**
 - 사전에 규정된 형식으로 양도 거래내역을 작성 후 수입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거래(양수양도) 및 포장처리실적 신고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거래신고 및 포장처리 실적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 절차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를 포장처리 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를 포장 처리 후 거래하는 경우에는 수입 이력시스템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선하증권번호로 기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묶음번호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하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Answer

서로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하시는 경우 묶음번호를 구성하실 수 있으며 묶음번호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묶음번호구성 및 체계 > —————

○ 묶음번호 구성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구성
-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 불가
- 원산지가 동일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를 구성

○ 묶음번호 체계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합계
길이	1	2	10	3	6	2	24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번호	변동	변동	변동	

묶음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 Question •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거래신고를 해야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축장의 시설과 일체를 이루거나 연접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전년도 평균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

그 중에서 종업원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10.12.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 5~9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11.12.22일부터 시행됩니다.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묶음번호 기록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 묶음번호 기록 및 관리

- 여러 개의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한 경우 수입이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등록하고 묶음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묶음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 Question •

식육포장처리업업체 업무담당자입니다.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atwatch.go.kr>)에 가입 후 영업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nswer

회원가입 후 해당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이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 중이거나 확인 이후 미승인 처리를 하는 경우로 콜센터로 전화문의 필요

• Question •

법 시행으로 전자거래 신고의무 대상 업체가 아닌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어떤 의무를 해야 하나요?

.....Answer

수입이력시스템에 전자거래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기재된 쇠고기포장 처리실적, 쇠고기포장처리판매·반출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해야 함

3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 Question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동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가요?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일(12.22.) 이후에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수입유통 식별쇠고기를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Question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 제20조에 따라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함

• Question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사업장에서 묶음번호표시가 가능한가요?

.....Answer

묶음번호 구성은 <별표 13>에 의해 구성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식육표시판에 묶음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할 수 있음

• Question •

묶음번호가 표시되어 입고된 각각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 시 하나의 판매 시 하나의 판매 표시판에 묶음번호 2개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nswer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묶음번호가 표시되었을 경우 판매표시판에 그 묶음번호를 표시하고 당해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면 되나, 각기 다른 묶음번호를 하나의 표시판에 한꺼번에 표시하고 다른 묶음의 고기를 섞어서 판매할 수 없음

• Question •

수입쇠고기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전자거래 의무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자거래 신고대상 및 범위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 중인 자
2.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겸업하여 운영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
3. 그 밖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자

• Question •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거래 신고 기한은 며칠입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한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전자거래 의무신고 대상 업체 :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이력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를 국립수위과학검역원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쇠고기수입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 할 수 있습니다.
- 국립수위과학검역원에서는 접수받은 신고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수입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내역을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 Question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쇠고기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는 선하증권번호를 식육판매표시판이나 라벨 용지등에 표시하여야 합니까?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일 이후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부착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 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시판이나 비닐포장으로 된 라벨 용지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쇠고기를 판매하시는 경우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Question •

식육표시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라고 하는데, 모든 번호를 다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20조에 의거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두 표시하거나 묶음번호를 구성한 후 그 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

식육판매업체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체 판매장에서 ‘수입이력시스템’을 위한 준비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라벨이 인쇄되는 저울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컴퓨터를 통해 수입유통식별번호 이력정보 공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

수입식육 부산물(소머리, 내장, 우족, 꼬리, 뼈)도 유통이력제가 시행되나요?

.....Answer

수입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단계에서부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발급하여 유통단계를 이력관리하고 있으며,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할 경우 처벌대상이 됨

제 5 장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편람

1.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2.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3. 수입매출
4. 거래내역(매입)
5. 거래내역(매출)
6. 재고 관리
7. 식육포장
8. 기준정보

1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가.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신규)

❖ 찾아가기 : 수입유통식별정보 >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등록

기본정보

•화물관리번호	10NSSLW18303256	•B/L No.	NSSLCTCKKA184142
•품명	2110111111 냉장 쇠고기	•표기품명	
•수입화주	0000337 코스모이트트레이딩		
•검역시행장	209 (주)오로라씨에스	•원산지	US 미국
•제조년월일 읽는방법	월/일/년	•유통기한표시내용	제조일로부터 90일

추가/삭제

•부위	==선택==	•수량(Box)		•중량(Kg)	
-----	--------	----------	--	---------	--

상세내역

번호	부위코드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1	BF003	채끝	100	1,000.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 받기 위한 유통식별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하는 기능이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화물관리번호	화물관리번호	필수항목
B/L No	선하증권번호	필수항목
수입자	수입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	필수항목
검역시행장	수입쇠고기를 입고할 검역시행장	필수항목
원산지	수입쇠고기 생산국가	필수항목
품명코드	수입쇠고기의 품명코드 (냉동, 냉장쇠고기, 부산물)	필수항목
표기품명	수입유통식별표에 출력할 영문표기명	
제조년월일 읽는방법	수입유통식별표에 출력할 제조년월일 읽는방법 (년/월/일, 월/일/년...)	필수항목
유통기한표시내용	수입유통식별표에 출력할 유통기한표시내용 (제조일로부터24개월,제조일로부터90일, 기타입력)	필수항목
부위	10대 대분할 부위명(등심, 갈비, 앞다리...)	필수항목
수량	부위별 Box 수량	필수항목
중량	부위별 중량 (Kg)	필수항목

3. 업무설명

1)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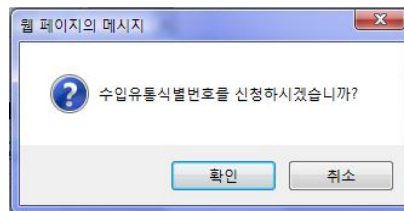
- ① (㉠)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수입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 ② (㉡)검역시행장, 원산지, 품명코드의 해당항목을 입력할 때 직접 명칭 또는 코드를 입력 후 **↵**키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코드가 입력이 되고,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을 경우 해당 항목 검색**[F3]**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할 수 있다.
- ③ 행추가
 -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항목을 초기화한다.
 - (㉢) 부위, 수량, 중량 정보를 입력 후 **행추가** 를 클릭하면 입력한 항목이 아래로 (㉣) 추가된다.
- ④ 행수정
 - 사용자가 입력한 항목(㉣)에서 수정할 항목을 선택한다.
 - (㉤) 부위, 수량, 중량 정보를 수정 후 **행수정** 을 클릭하면 수정한 항목이 아래로 (㉣) 추가된다.

④ 행삭제

- 사용자가 입력한 항목(㉔)에서 삭제할 항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을 선택 후 **행삭제**를 클릭하면 입력한 항목이 삭제된다.

⑥ 유통식별번호 신청

- 항목을 추가 완료 후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을 클릭하면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여부확인 화면이 팝업되며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신청되고 이력관리시스템은 자동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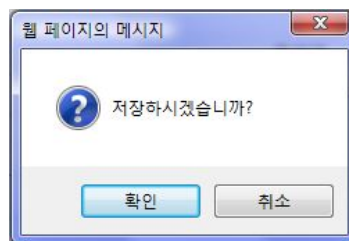
2) 수정

① 사용자는 (㉑)제조년월일읽는 방법, 유통기한 표시내용을 수정 할 수 있다.

② 행수정

사용자가 입력한 항목(㉔)에서 수정할 항목을 선택한다. (㉔) 부위, 수량, 중량 정보를 수정 후 **행수정**을 클릭하면 수정한 항목이 아래로(㉔) 추가된다.

③ 수정할 내용이 수정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여부를 묻는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수정한 내용이 저장된다.



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현황)

❖ 찾아가기 : 수입유통식별정보 >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 <현황>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

신청일자: 2009-11-02 ~ 2010-11-22
 신청여부: 발급
 화물관리번호: []
 B/L No.: []
 검역시행장: []
 접수번호: []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목록

번호	신청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품명	수입화주	상태	접수번호	작업
1	2010-11-18	816103000021	NSSLCTCKKA184021	냉동 쇠고기	코스모미트트레이딩	발급		수정
2	2010-11-18	816103000013	NSSLCTCKKA183916	냉장 쇠고기	코스모미트트레이딩	발급		수정

상세내역

번호	부위코드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1	BF003	채끝	199	1,000.00
2	BF006	우둔	260	2,103.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정보를 조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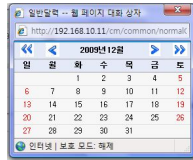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신청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일자	필수항목
신청여부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여부(신청, 위해, 폐기)	
화물관리번호	화물관리번호	
B/L No.	선하증권번호	
검역시행장	수입쇠고기가 입고될 검역시행장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신청일자 항목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일자를 직접입력하거나 달력[㉡]을 클릭하여 달력 팝업창에서 조회하고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시작일자와 조회종료일자의 기간을 입력한다.



- ② 상세한 조회를 위하여 신청여부, 화물관리번호, B/L No를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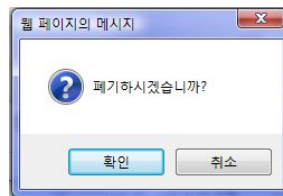
- ③ 선택적 조회조건인 검역시행장은 항목에 코드 또는 검역시행장을 입력 후 [Enter]키를 입력하거나, 검색[F3]을 클릭하여 검역시행장 정보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④ 조회된 창고내역에서 입력할 창고를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창고가 하나일 경우 자동 선택된다.)
- ⑤ 조회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내역이 화면(㉢)에 출력된다.
- ⑥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항목에 선택된 항목의 세부내역이 출력된다.

2) 수정

- ① 조회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내역이 화면 (㉠)에 출력된다.
- ②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항목에 선택된 항목의 세부내역이 출력된다.
- ③ 선택한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3) 수입유통식별번호 폐기

- ① 조회조건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내역이 화면 (㉠)에 출력된다.
- ② 화면(㉠)에 출력된 내용을 선택하면 상세내역(㉡) 항목에 선택된 항목의 세부내역이 출력된다.
- ③ 출력된 상세내역항목에서 폐기할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선택[㉢] 한 후 **수입유통식별번호폐기** 버튼을 클릭하면 폐기유무를 묻는 화면이 팝업 되며 [확인]을 선택하면 폐기 사유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④ 출력된 화면을 확인하고 폐기 사유를 입력후 **폐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수입유통식별번호는 폐기처리된다.

번호	부위코드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1	BF002	통삼	10	100.00

2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가.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 찾아가기 : 수입유통식별정보 > 수입유통식별표발행

수입유통식별표발행

로그아웃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G&A

수입유통식별정보
수입유통식별표발행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

수입유통식별표발행 [도움말](#)

*신청일자 2010-07-06 ~ 2010-09-09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발행여부 미발행

수입화주 출력기기 RFID 프린터(BRACK FISH) 일반프린터 부위 양지

[조회](#) [등록](#) [초기화](#)

수입유통식별표목록

번호	신청일자	발행여부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2010-07-08	미발행	815103000043	냉동 쇠고기	양지	1,000	30,000.00	미국	NSSLCTCKKA18398E
2	2010-07-08	미발행	814303000032	냉동 쇠고기	양지	12	40.00	미국	NSSLCTCKKA184014
3	2010-07-08	미발행	813401000015	냉동 쇠고기	양지	36,843	136,813.00	호주	NSSLCTCKKA184077
4	2010-07-08	미발행	812203000063	냉장 쇠고기	양지	200	5,000.00	미국	NSSLCTCKKA183991
5	2010-07-07	미발행	812201000035	냉동 쇠고기	양지	13	150.00	호주	NSSLCTCKKA183991
6	2010-07-07	미발행	812101000038	냉동 쇠고기	양지	50	600.00	호주	NSSLCTCKKA18398E
7	2010-07-07	미발행	811903000057	냉동 쇠고기	양지	20	100.00	미국	NSSLCTCKKA183984
8	2010-07-07	미발행	811604000035	냉동 쇠고기	양지	12	120.00	멕시코	NSSLCTCKKA18397E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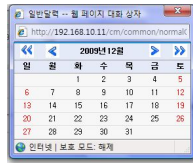
검역시행장에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하는 기능으로 검역시행장 입고 전 수입유통식별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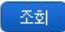

나.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신청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일자	필수항목
화주	수입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선하증권번호	
발행여부	발행여부(미발행, 발행, 재발행, 폐기)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출력기기	RFID 프린터(BRACK FISH), 일반프린터	필수항목

3. 업무설명

- 1) (㉠) 신청일자 항목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한 일자를 직접입력하거나 달력[



- 2) 상세한 조회를 할 경우 화주,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발행여부(미발행), 품명, 부위, 조회조건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화면에 출력된다.
- 3) 출력기기를 우선 선택 한 뒤 출력된 항목(㉡)을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작업이 수행된다. 프린터 출력 전 수입유통식별표의 자세한 세부정보를 확인 할 경우 조회를 통하여 출력된 화면 목록 중 세부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의 유통식별번호를 클릭하면 수입유통식별표의 자세한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수입유통식별표 발행(RFID 프린터 BLACK FISH) 출력

RFID 태그 프린터 선택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제조년월일	유통기한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잔여수량
1	807803001063	냉동 쇠고기	등심	100
	월/일/년	제조일로부터 2개월	소고기 100%	0

오로라01
 1. 807803001063 (100)

오로라02

오로라03

오로라04

RFID 태그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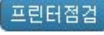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수입유통식별표발행 화면에서 조회를 통하여 출력된 내용 중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등록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으로 미리 등록된 한 대 이상의 전용 프린터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할 수 있다.

2. 업무설명

- 1) 출력할 수입유통식별표 항목을 선택하고 부위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수정한다.

- 2) 출력할 대상 프린터를 선택후  버튼을 클릭한다.
- 3)  을 클릭한다.
- 4) 프린터출력 시 수입쇠고기의 부위별 Box수량 만큼 출력되며 수입유통식별표의 발행수량이 자동으로 카운터 된다.
- 5)  을 클릭하면 현재 설정되어있는 프린터의 상태를 점검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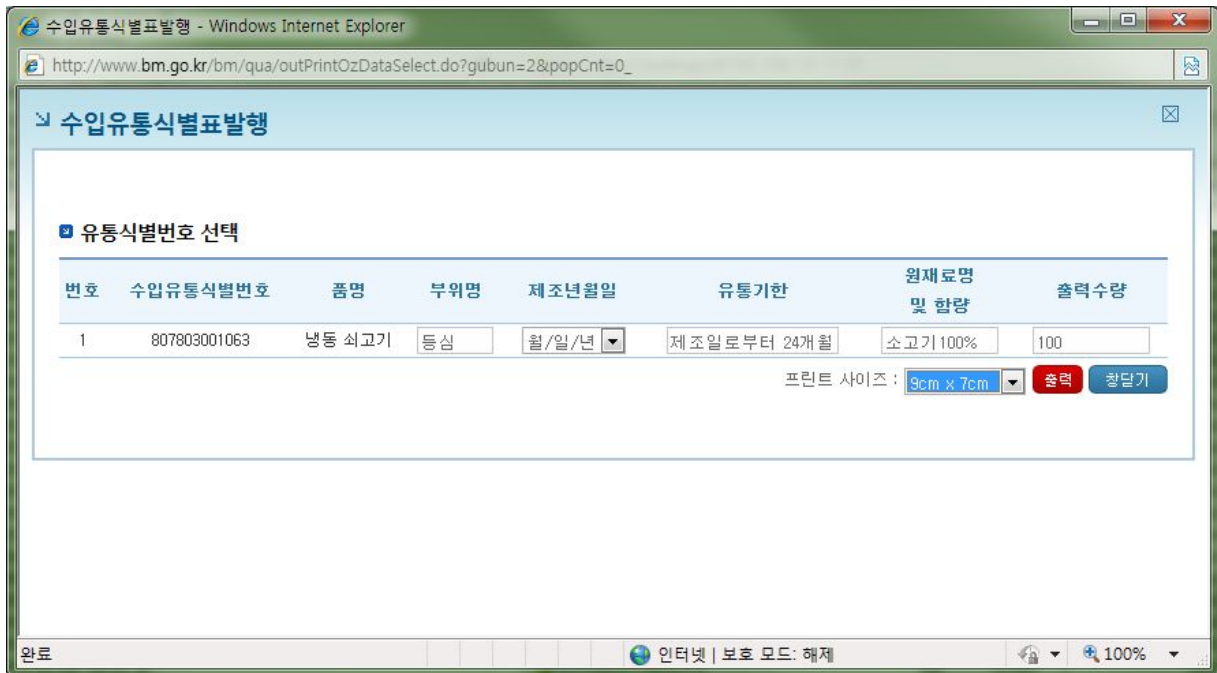
특징

- 한 대 또는 복수이상의 태그프린터를 통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출력한다.
- 원하는 수량만큼만 지정하여 출력 할 수있다.
- 출력된 수입유통식별표에는 RFID의 태그 정보 유출 시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한 기능을 포함 하고 있다.(RFID 태그의 고유번호(TID)와 Access password를 이용하여 위변조 방지)

주의사항

-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로는 출력 할 수 없다.

수입유통식별표 발행(일반 프린터)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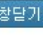
수입유통식별표발행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www.bm.go.kr/bm/qua/outPrintOzDataSelect.do?gubun=2&popCnt=0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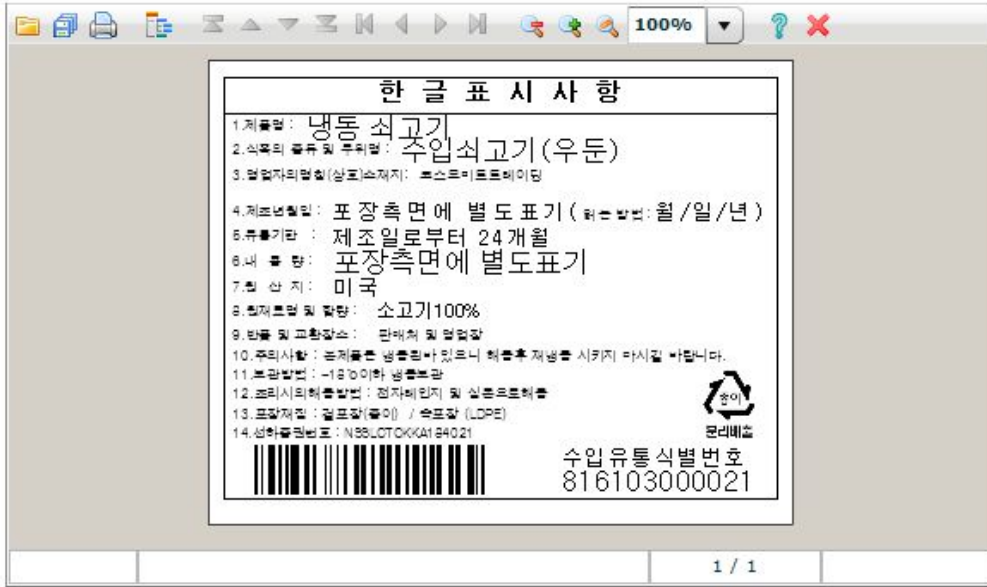
수입유통식별표발행

유통식별번호 선택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출력수량
1	807803001063	냉동 쇠고기	등심	월/일/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소고기 100%	100

프린트 사이즈 : 9cm x 7cm  

완료 인터넷 | 보호 모드: 해제 1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수입유통식별표발행 화면에서 조회를 통하여 출력된 내용 중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일반 프린터기로 수입유통식별표를 발행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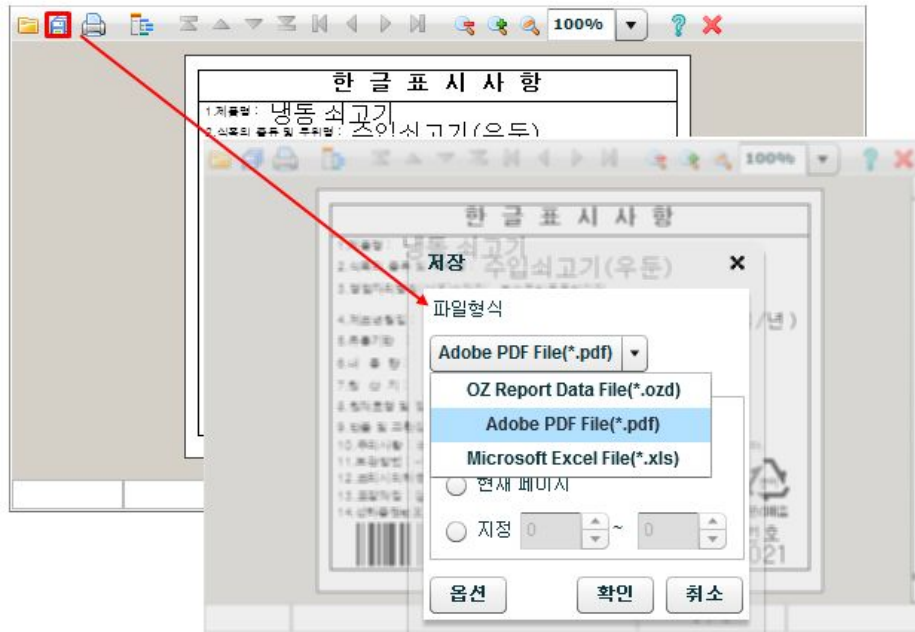
2. 업무설명

- 1) 출력할 수입유통식별표 항목을 선택하고 부위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수정한다.
- 2) 출력할 프린터기의 용지의 사이즈를 선택을 한다. (8cm x 8cm , 9cm x 7cm, 10cm x 8cm)
- 3)  을 클릭한다.
- 4) 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트 미리보기 화면이 나온다.
- 5)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한다.

TIP

특징

- 원하는 수량만큼만 지정하여 출력 할 수 있다.
- 수입유통식별표를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수입유통식별표 재발행

수입유통식별표 재발행

신청일자: 2009-09-01 ~ 2010-09-09

B/L No: []

출력기기: RFID 프린터(BRACK FISH) 일반프린터

발행여부: 재발행

총발행수량: 7

작업구분: 재발행

작업수량: []

사유: 도기

번호	신청일자	발행여부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0-08-05	재발행	807901001823	냉장 쇠고기(지육)	안심	50	500.00	호주	NSSLCTCGBA18300
2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5804000011	냉동 쇠고기	안심	30	150.00	멕시코	NSSLCTCKKA18403E
3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5803000028	냉장 쇠고기	목심	50	500.00	미국	NSSLCTCKKA184034
4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5801000032	냉동 쇠고기	등심	60	600.00	호주	NSSLCTCKKA18403E
5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5704000016	냉동 쇠고기	철도	50	300.00	멕시코	NSSLCTCKKA18403C
6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5303000048	냉장 쇠고기	안심	10	100.00	미국	nsslctckka183992
7	<input type="checkbox"/> 2010-07-08	재발행	814803000055	냉장 쇠고기	안심	1	20.00	미국	NSSLCTCKKA18398E
8	<input type="checkbox"/> 2010-07-07	재발행	808701000015	냉장 기타 쇠고기	냉장기타쇠고기	100	2,720.00	호주	KKLUDL1210508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이미 발행된 수입유통식별표의 파손 또는 분실이 발행한 경우 사용자는 수입유통식 별표를 재발행 또는 폐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수량 및 재발행/폐기 사유를 입력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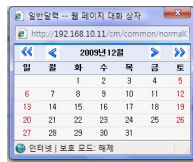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신청일자	수입유통식별표 신청일자	필수항목
수입화주	수입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선하증권번호	
발행여부	발행여부(발행, 재발행, 폐기)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	
작업구분	작업구분(재발행, 폐기)	필수항목
작업수량	재발행 수량 및 폐기 수량	필수항목
사유	재발행사유 선택 및 폐기사유입력	필수항목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신청일자 항목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한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을 클릭하여 달력 팝업창에서 조회하고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시작일자와 조회종료일자의 기간을 입력한다.



- ② (㉠)상세한 조회를 할 경우 화주,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품명, 부위, 발행여부를 입력한다.
- ③ (㉢) 발행여부[선택]에서 발행 또는 재발행 항목을 선택한다.
- ④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회조건 항목이 화면에 출력(㉣)된다.

2) 재발행/폐기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회조건 항목이 화면에 출력(㉣) 된다.
- ② 화면에 출력된 내용중 재발행 또는 폐기 작업을 수행할 항목(㉣)을 선택[㉤]한다.
(작업 선택 시 여러 항목을 동시에 선택 할 수 없다.)

- ③ (㉞) 작업구분[선택]에서 재발행, 폐기 항목을 선택한다.
- ④ (㉞)재발행일 경우 작업수량에 재발행 수량을 입력하고 폐기일 경우는 전체수량을 폐기하기 때문에 작업수량을 입력하지 않는다.
- ⑤ (㉞) 재발행일 경우 사유를 선택하고 폐기일 경우는 사유를 입력한다.
- ⑥ 재발행일 경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작업이 수행되고 폐기일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폐기 작업을 한다.

나. 수입유통식별표 발행현황

☞ 찾아가기 : 수입유통식별정보 >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

The screenshot shows the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관리' (Import Distribution Label Issuance Status Management) page in a Windows Internet Explorer browser. The page title is '수입유통식별정보' (Import Distribution Label Information) and the sub-page is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 (Import Distribution Label Issuance Status). The page contains a search bar, a table of issued labels, and a list of label details.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

신청일자: 2010-09-01 ~ 2010-09-09

발행여부: ==전체==

부위: ==전체==

B/L No

Excel 조회 초기화

수입유통식별표발행현황목록

번호	신청일자	발행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발행여부
1	2010-09-08		807803001071	냉동 쇠고기	안심	300	1,000.00		KKLUDL1210509	미발행
2	2010-09-07		807803001063	냉동 쇠고기	갈비	100	400.00	미국	KKLUDL1210509	미발행
3	2010-09-07	2010-09-09	807803001063	냉동 쇠고기	등심	100	300.00	미국	KKLUDL1210509	발행
4	2010-09-07		807803001063	냉동 쇠고기	안심	100	300.00	미국	KKLUDL1210509	미발행
5	2010-09-06	2010-09-06	807503000305	냉장 소머리(사용 중지)	소머리	1	1.00	미국	NSSLCTCKKA184023	발행
6	2010-09-02		807803001055	냉동 쇠고기(지육)	목심과 등심	550	5,501.00	미국	1111	미발행
7	2010-09-01		807803001047	냉동 쇠고기	갈비	100	400.00	미국	KKLUDL1210509	미발행
8	2010-09-01		807803001047	냉동 쇠고기	등심	100	300.00	미국	KKLUDL1210509	미발행
9	2010-09-01		807803001047	냉동 쇠고기	안심	100	300.00	미국	KKLUDL1210509	미발행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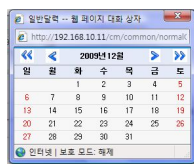
사용자는 조회를 통하여 수입유통식별표의 발행 이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화주, 수입유통식별번호, B/L, 부위별 상세하게 조회하여 수입유통식별표의 발행현황을 조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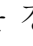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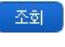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신청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일자	필수항목
수입화주	수입쇠고기를 수입한 수입업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선하증권번호	
발행여부	수입유통식별표 발행상태(발행, 미발행, 재발행, 폐기)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	

3. 업무설명

- 1) ㉠ 신청일자 항목에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한 일자를 직접입력하거나 달력[]을 클릭하여 달력 팝업창에서 조회하고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조회시작일자와 조회 종료일자의 기간을 입력한다.



- 2) ㉠ 상세한 조회를 원할 경우 화주, 수입유통식별번호, B/L No, 부위정보를 이용하여 조회 할 수 있으며, 해당항목을 입력할 때 직접 명칭 또는 코드를 입력 할 수 있다.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의 검색[]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한다.
- 3) 모든 조회항목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회조건이 항목이 ㉠화면에 출력된다.

4) 모든 조회항목을 입력 후 **Excel**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회조건의 항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TIP

특징

- 수입유통식별표의 발행, 재발행, 폐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3 수입매출

가. 수입매출 등록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로그아웃 | 사업장변경 | 지점관리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수입매출관리

수입매출반품

수입매출현황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양수량도일괄등록

수입매출등록

거래내역(매출) > 수입매출관리 [도움말](#)

*매출일자	2010-11-22	*매출번호		*매출처	124-36-43677	코스모미트트레이딩	사업장	0003901	(주)견우푸드
*참고참고	0064507	(주)오로라씨에스							

* 추가/삭제

*수입유통식별번호	816103000021	*품명	냉동 쇠고기	*부위	채끝	채끝	
*수량(Box)	10	*중량(Kg)	100.00	원산지	미국	B/L No	NSSLCTCKKA184021

*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B/L No	원산지
1	816103000021	냉동 쇠고기	채끝	10	100.00	NSSLCTCKKA184021	미국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판매한 수입쇠고기의 거래내역을 등록 및 수정/삭제 작업을 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출일자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거래일자	필수항목
매출처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업체	필수항목
사업장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업체의 사업장	
출고창고	수입쇠고기 판매시 출고창고	필수항목
정정사유	거래내역의 정정사유입력(수정시 사용)	필수항목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필수항목
일련번호	해당 수입쇠고기의 Box별 부여된 일련번호	
품명	수입쇠고기 품명	
부위	수입쇠고기 부위명	필수항목
수량	판매한 Box수량	필수항목
중량	판매한 중량	필수항목
원산지	수입쇠고기의 생산국	
B/L No	선하증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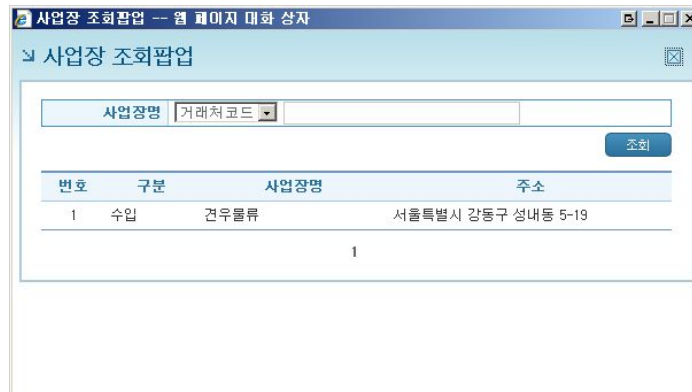
3. 업무설명

1) 등록

- ① (㉠) 매출일자는 쇠고기를 판매한 일자를 입력하고 매출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매출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할 수 있다. 사업장은 매출처에 속한 사업목록
- ② (㉡) 출고창고는 기준정보→입출고처 관리에 등록된 대표창고로 출력이 되며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입력하거나 검색[]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할 수 있다.
- ③ 사업장 항목에 매입처 사업장 명 혹은 매입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의 사업장이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의 사업장이 조회되면 사업장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의 사업장들이 조회된다.

또한, 사업장 항목에 사업장 명 혹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사업장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 사업장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사업장 중 하나를 클릭하여 사업장 항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을 입력한다. 매입처 사업장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매입처의 대표사업장이 등록 된다.

- ④ (㉠)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 후 Enter키를 입력하면 품명, 원산지, B/L No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검색 [🔍] 을 클릭하면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수입유통식별번호중 중 하나를 클릭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항목을 입력한다. (㉠)부위명은 선택박스[선택 ▼]를 클릭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⑤ 행추가

(㉔) 수량, 중량 정보를 입력한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㉔)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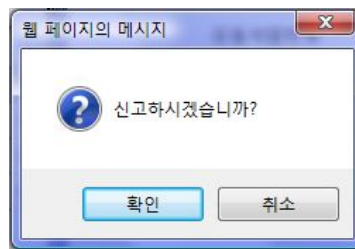
⑥ 행수정

상세내역(㉔) 화면 수정할 항목을 선택 후 (㉔)항목의 내용을 수정 후 **행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한 내용이 상세내역(㉔)이 수정된다.

⑦ 행삭제

사용자의 실수로 잘못입력한 항목이 있으면 잘못입력된 상세내역의(㉔) 항목을 선택하고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역이 삭제된다.

⑧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여부를 묻는 화면이 팝업되며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신고처리 된다.



2) 수정

① (㉔) 매출일자와 매출번호는 수정 할 수 없으며 매출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Q**]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할 수 있다.

② 출고창고는 사용자가 직접입력하거나 검색[**Q**]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입력 할 수 있다.

③ 정정사유항목에 정정사유를 입력한다.

④ 행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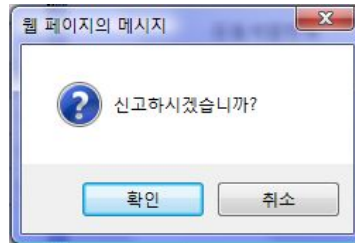
(㉔) 수량, 중량 정보를 입력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내역(㉔) 항목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된다.

⑤ 행수정

상세내역(㉔)의 항목을 클릭하면 추가/삭제(㉔) 항목에 선택한 내역이 표시되며 사용자는 내용을 수정 후 **행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내용이 상세내역(㉔)에 수정되어 입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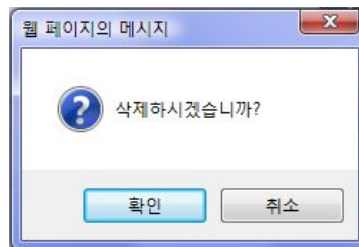
⑥ 행삭제

잘못 입력한 항목이 있으면 잘못 입력된 상세내역의(☹) 항목을 선택 하고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역이 삭제된다.



⑦ 모든 내용을 수정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여부를 묻는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신고처리 된다.

3) 삭제



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여부를 묻는 화면이 팝업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내용이 삭제된다.

나. 수입매출 반품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수입매출반품

수입매출반품

반품일자: 2009-09-01 ~ 2010-09-09 | 등록구분: ==전체==

매출반품목록

번호	반품일자	반품번호	매출처명	등록구분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09-08	00001	AA관세사	수기등록	2010-09-08	수정 삭제
2	2010-07-08	00003	(주)한결엘에스	수기등록	2010-07-08	수정 삭제
3	2010-07-07	00005	경인냉장(주)	수기등록	2010-07-07	수정 삭제
4	2010-07-01	00002	(주)한결엘에스	수기등록	2010-08-25	수정 삭제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B/L No	수입일	수출국
1	807803000100	냉장 쇠고기	채끝	1	1.00	SITXIBUS219552		미국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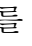
사용자가 반품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으로 반품으로 처리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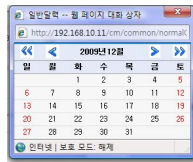
2. 주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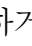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반품일자	반품된 일자(조회 시작일자, 조회종료일자 입력)	필수항목
매출처	수입쇠고기를 반품한 업체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반품일자는 사용자가 해당일자를 직접입력하거나 달력을 클릭하여 달력팝업창에서 조회하고자하는 날자를 선택하여 입력하며 시작일자와 종료 일자를 지정한다.



- ② (㉠)상세 정보조회를 할 경우 매출처를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회 할 수 있다.
- ③ 매출처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하거나 검색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선택하여 매출처를 입력 한다.
- ④ 조회를 위한 주요 조회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 ⑤ 화면에 출력된(㉡) 항목을 클릭하면 항목의 상세내역(㉣)창에 선택한 항목의 상세내역이 출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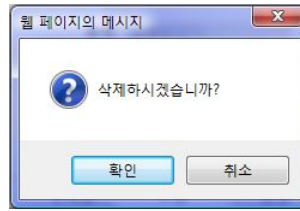
2) 수정

- ① 조회를 위한 주요 조회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 ② 출력된 항목을 선택하여 **수정** 버튼을 선택하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3) 삭제

- ① 조회를 위한 주요 조회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② 출력된 내용(㉠)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에 삭제여부를 묻는 화면에서 [확인]을 선택하면 내역이 삭제된다.

다. 수입매출 현황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수입매출현황

수입매출현황

거래구분: ==전체==

조회 | 거래내역서 | 거래현황 | 초기화

매출현황목록 총 7건

번호	매출일자	구분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출처	품명	수량(Box)	중량(Kg)	수출국	B/L No
1	2010-09-08	정상	807801000243	오케이미트(주)	냉장 쇠고기	20	20.00		NSSLCTCKKA183902
2	2010-09-08	정상	807803000907	삼성포장	냉동소위	154	123.00	미국	KKLUDL1905204
3	2010-09-08	반품	807803000100	AA관세사	냉장 쇠고기	-1	-1.00	미국	SITXIBUS219552
4	2010-09-02	정상	807803001055	보강관세사무소	냉동쇠고기(지육)	33	33.00	미국	1111
5	2010-09-02	정상	807803001055	(주)한결엘에스	냉동쇠고기(지육)	20	20.00	미국	1111
6	2010-09-02	정상	807803001055	나라합통관세사무소	냉동쇠고기(지육)	10	100.00	미국	1111
7	2010-09-02	정상	807803000923	오케이미트(주)	냉동 쇠고기	50	540.00	미국	KKLUDL1210508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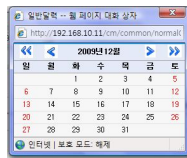
사용자가 해당 거래기간 동안 판매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출처 별로 해당 판매내역을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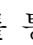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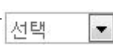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출일자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일자	필수항목
매출처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업체	
거래구분	거래내역구분 (정상, 반품)	

3. 업무설명

- 1) ㉠매출일자는 사용자가 해당일자를 직접입력하거나 달력을 클릭하여 달력 팝업 창에서 조회하고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입력하며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지정한다.



- 2) ㉠상세 정보조회를 할 경우 매출처, 거래구분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회 할 수 있다.
- 3) ㉠매출처명을 직접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하거나 검색메뉴를 통하여 조회하여 매출처를 선택하여 입력 한다.
- 4) ㉠거래구분은 선택박스[선택]를 클릭하여 정상, 반품을 선택하여 입력하며 입력이 없으면 전체를 조회하도록 설정되어있다.
- 5) 조회를 위한 주요 조회항목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된다.

6) 사용자가 매출현황 기능에서 조회를 한 후 **거래내역서**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된 내역이 다음의 화면과 같이 출력 가능한 화면으로 출력된다.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

축산물수입판매업소명 (신세계푸드)

제품명	판매일 (거래연월일)	판매처		판매량	수입일	선하증권번호	수출국	수출 (가공회사명)
		판매처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냉동 쇠고기 (등심)	2010-01-25	(주)경우마들	031-798-0111	500		1	미국	
냉동 쇠고기 (채끝)	2010-01-25	(주)고기스토아	02-822-5500	3	2010-01-19	MAEUAI4217502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안심)	2010-01-25	(주)고기스토아	02-822-5500	5	2010-01-19	MAEUAI4217503	호주	SWIFT AUSTR
냉장 쇠고기 (갈비)	2010-01-25	(주)한화칼러리아	02-410-7515	-10		HJSCBNEI01893304	호주	
냉동 쇠고기 (채끝)	2010-01-24	(주)고기스토아	02-822-5500	3	2010-01-19	MAEUAI4217502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안심)	2010-01-24	(주)고기스토아	02-822-5500	6	2010-01-19	MAEUAI4217503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안심)	2010-01-22	(주)경우마들	031-798-0111	-1	2010-01-19	MAEUAI4217503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채끝)	2010-01-22	(주)경우마들	031-798-0111	6	2010-01-19	MAEUAI4217502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등심)	2010-01-22	(주)경우마들	031-798-0111	5	2010-01-19	MAEUAI4217503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목심)	2010-01-22	(주)경우마들	031-798-0111	4	2010-01-19	MAEUAI4217502	호주	SWIFT AUSTR
냉동 쇠고기 (등심)	2010-01-22	(주)경우마들	031-798-0111	10	2010-01-19	MAEUAI4217503	호주	SWIFT AUSTR

* 본서식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추적시스템에서 출력한 양식입니다.

7) 사용자가 매출현황 기능에서 조회를 한 후 **거래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된 내역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출력 가능한 화면으로 출력된다.

라.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The screenshot shows a web browser window with the URL <http://211.232.173.132/bm/qua/selectDelngTrnsmisRegist.do>. The page title is '거래내역전송 - Windows Internet Explore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Below the title, there is a search bar for '거래내역 파일' with a file path and a '파일업기' button. A '신고' button and an '엑셀파일 양식' button are also visible. The main data is presented in a table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번호	매입매출일자	거래구분	반품구분	매입매출처	입출고처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1	2010-01-24	매출	정상	(주)고기스토아	(주)신세계푸드	807601000016	안심	5	10.00
2	2010-01-24	매출	정상	(주)고기스토아	(주)신세계푸드	807601000024	채끝	3	15.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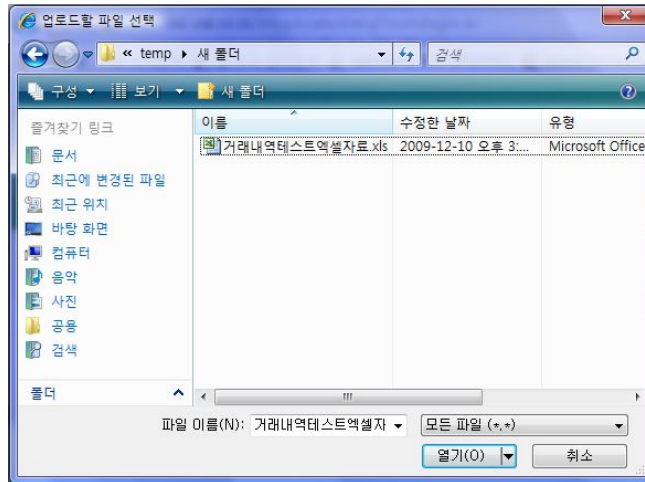
사용자가 판매한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업로드 하여 신고하는 화면이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거래내역파일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거래내역을 저장한 엑셀파일	

3. 업무설명

- 1) 거래내역전송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탐색 창을 호출한다.



- 2) 거래내역 전송을 위한 해당 거래내역 등록 파일을 선택한다.
- 3) 거래내역 전송 파일 선택 후,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읽어온다.
- 4) 거래내역 파일을 읽은 후, 화면에 표시된 거래내역 건수(전체/정상/오류)와 거래내역 리스트를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내역을 등록한다.
- 5) **엑셀파일 양식**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마. 양도양수일괄등록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양수양도일괄등록

로그아웃 | 사업장변경 | 지정관리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수입매출관리 수입매출반품 수입매출현황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양수양도일괄등록

양수양도일괄등록 거래내역(매출) > 양수양도일괄등록

양도 사업장 0066195 (주)코스모미트트레이딩 양도양수 조회 초기화

양수 사업장 0003901 (주)견우푸드

양도 사업장 재고조회 총 2건

번호	참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주)오로라씨에스	816103000021	냉동 쇠고기	채끝살	-20	-200.00	미국	NSSLCTCKKA184021
2	(주)코스모미트트레이딩	816103000021	냉동 쇠고기	채끝살	20	200.00	미국	NSSLCTCKKA184021

1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거래하는 대상 입출고처의 정보를 조회, 등록 및 삭제 관리 사업자의 사업장이 여러개 일 경우 매입 매출을 동시에 등록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양도 사업장	양도 사업장의 사업장코드	
양도 사업장명	양도 사업장의 업체명	
양수 사업장	양수 사업장의 사업장코드	
양수 사업장명	양수 사업장의 업체명	

3. 업무설명

- 1) 양도사업장 항목의 업체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양도사업장 조회 팝업창을 띄운 후, 양도 사업장을 선택한다.
- 2) 양수사업장 항목의 업체조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양수사업장 조회 팝업창을 띄운 후, 양도 사업장을 선택한다.



-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양도 사업장의 재고를 조회한다.
- 4) 조회된 데이터를 중 양도를 할 데이터를 체크 한 후, 양도양수 **양도양수** 버튼을 클릭하여 양도 양수를 한다.

4 거래내역(매입)

가. 매입관리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매입관리

The screenshot display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menu with options like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입)', '식육포장', etc.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매입관리' and includes a search bar with filters for '매입기간' (Purchase Period) and '등록구분' (Registration Category). Below this is a '조회리스트' (Search List) table with columns for '번호' (No.), '매입일자' (Purchase Date), '매입번호' (Purchase No.), '매입처명' (Purchase Name), '입고처' (Supplier), '등록구분' (Registration Category),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and '작업구분' (Action Category). The table contains five rows of purchase data. Below the list is a '상세내역' (Detailed Record) table with columns for '번호' (No.), '수입유통식별번호' (Import/Export Identification No.), '품명' (Product Name), '부위명' (Part Name), '수량(Box)' (Quantity), '중량(Kg)' (Weight), '원산지' (Origin), and 'B/L No'. This table shows four rows of detailed purchase information.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매입한 수입쇠고기의 매입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화면으로 해당 매입기간 내 매입처에서 매입한 수입쇠고기 내역을 조회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입기간	수입쇠고기 등록된 일자별 매입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매입일자 입력	필수
등록구분	수입쇠고기를 매입등록한 방법을 선택	
매입처	수입쇠고기를 매입한 업체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 OR 사업장명)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매입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입처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등록구분은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의 매입기간 항목에 매입내역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매입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조회조건(㉠)의 등록구분(수기등록, 자동매입, 일괄등록, 웹서비스)을 선택한다.
- ③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가 조회되면 매입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매입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입처 항목(매입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④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입처의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번호, 매입처명, 입고처, 등록일자)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 ⑤ 하단(㉡)에 조회된 매입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을 보여준다.

3) 등록

- ① 신규 매입 내역을 수동으로 등록할 경우, **수기매입**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② 신규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매입**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수정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입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㉔)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매입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5) 삭제



- ① 조회조건(㉑)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입내역(㉒)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㉓)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단,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나. 수기 매입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매입관리 > 수기매입

매입등록(수기)

거래내역(매입) > 매입관리

매입정보

매입일자	2010-12-08	매입번호	* 매입처	108-81-44830	(주)한중푸드	사업장	0019689	견우물류
입고처	0066010	(주)견우마을						

추가/삭제

* 수입유통식별번호	807601000024	품명	냉동쇠고기	* 부위	채끝	채끝
* 수량(Box)	1	* 중량(Kg)	12.00	원산지	호주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7601000024	냉동쇠고기	채끝	1	12.00	호주	MAEUA14217502
2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안심	1	50.00	호주	MAEUA14217503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매입한 수입쇠고기의 매입내역을 등록 및 수정하는 화면으로 매입일자에 대상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수입쇠고기 내역을 신고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입일자	수입쇠고기를 양도자로부터 매입한 연월일	필수
매입번호	등록 시 자동입력	필수
매입처코드	수입쇠고기를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매입처명	수입쇠고기를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자명	필수
사업장코드	수입쇠고기를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수입쇠고기를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장명	
입고처코드	매입 수입쇠고기가 실제로 입고된 매장/창고 관리번호	필수
입고처명	매입 수입쇠고기가 실제로 입고된 매장/창고 명	필수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입 당시 해당 수입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 식별번호 12자리	필수
부위	매입한 수입쇠고기의 부위 (등심/안심/목살 등)	필수
상세부위	부위의 상세부위 (본갈비/참갈비/꽃갈비 등)	
수량(Box)	매입한 수입쇠고기 수량을 Box단위로 기재	필수
중량(Kg)	매입한 수입쇠고기의 중량을 Kg단위로 기재	필수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매입일자 항목을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입번호, 매입처는 데이터를 지워진 상태로 설정한다. 입고처는 기본 입고처가 설정된다.

2) 등록

- ① 신규 매입내역 등록일 경우, 매입관리 화면에서 **수기매입**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등록/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②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가 조회되면 매입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매입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입처 항목(매입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③ 사업장 항목에 매입처 사업장 명 혹은 매입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의 사업장이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의 사업장이 조회되면 사업장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의 사업장들이 조회된다.

또한 사업장 항목에 사업장 명 혹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사업장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 사업장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사업장 중 하나를 클릭하여 사업장 항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을 입력한다.

매입처 사업장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매입처의 대표사업장이 등록 된다.

④ 입고처 항목에 입고처 명 혹은 입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입고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입고처 관리번호와 입고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입고처가 조회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고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입고처 항목에 입고처 명 혹은 입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고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입고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입고처 항목(입고처 명, 입고처관리번호)을 입력한다.

단 등록 시 기본 값으로 선택한 사업장의 기본창고가 입고처 항목에 자동 설정된다.

⑤ 행추가

- 추가/삭제(Ⓢ)의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항목을 초기화 시킨다.
- 추가/삭제(Ⓢ)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또는 [↵]키를 누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한 후 품명, 부위List, 원산지, B/L No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매입처에서 등록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검색 [🔍] 을 클릭하면 매입처에서 매출등록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조회된다.

유통식별번호 조회팝업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유통식별번호 조회팝업

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

번호	참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삼성포장	120000000001	냉동 쇠고기	안심살	1	1.00	미국	BL_2010_03_22_02
2	삼성포장	120000000001	냉동 쇠고기	뒷등심살	2	2.00	미국	BL_2010_03_22_02
3	삼성포장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깃살	-15	-48.00	호주	SYD66969
4	삼성포장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도	202	1895.00	호주	SYD66969
5	삼성포장	807601000024	냉동쇠고기	채끝	-12	-345.00	호주	MAEUA14217502

1

이 때 조회된 수입유통식별번호중 중 하나를 클릭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항목을 입력한다.

- 추가/삭제(Ⓢ)의 부위, 수량, 중량을 입력한 후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내역(Ⓢ)에 등록될 한 개의 매입내역을 추가한다.

⑥ 행수정

- 행추가가 완료된 후 상세내역(Ⓢ)의 수정 하고자하는 내역의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될 항목을 선택한다.
- 추가/삭제(Ⓢ)의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 입력한다.
- 행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내역(Ⓢ)에 등록될 한 개의 매입내역을 수정한다.

⑦ 행삭제

- 행추가 또는 행수정이 완료된후 상세내역(Ⓢ)의 삭제 하고자하는 내역의 항목을 클릭하여 삭제될 항목을 선택한다.
-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내역(Ⓢ)에 등록된 한 개의 매입내역을 삭제한다.

- ⑧ 추가/삭제 화면(Ⓢ)에서 매입내역 항목 추가/삭제 작업이 끝나면 매입일자, 매입번호, 매입처, 입고처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을 등록한다.

- ⑨ 매입내역 등록 후, 매입관리 화면으로 복귀할 경우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3) 수정

- ① 매입내역을 수정할 경우, 매입관리 화면에서 조회한 매입내역 리스트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등록/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 ②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등록의 ③ 행추가 ④ 행수정 ⑤ 행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매입내역을 추가/수정/삭제한다.
- ③ 매입 수정 화면의 정정사유 항목을 입력하고 **정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을 수정한다.
- ④ 매입내역 수정 시, 매입내역을 삭제할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한다.
- ⑤ 추가/삭제 화면(㉠)에서 매입내역 항목 추가/삭제 작업이 끝나면 **정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내역을 수정한다.
- ⑥ 매입내역 수정 후, 매입관리 화면으로 복귀할 경우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 4) 신규 등록 및 수정 작업 완료 후, **신고**, **정정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내역서 확인 메시지가 호출되며 거래내역서를 확인할 경우, [확인]을 작업 화면으로 돌아갈 경우 [취소]를 선택한다.



거래내역서 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거래내역서 출력화면이 호출된다. 단, [취소]를 클릭하면 작업이 취소된다.

5) 거래내역서 확인 메시지에서 [확인]을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거래내역서가 출력된다.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12.22>

거래내역서

판매업소명 (상성판매)

번호	거래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류	물량 (kg)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성하음 권번호)	매입처
1	2010-01-03	쇠고기	20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민들레푸드
2	2010-01-02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상성수입
3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상성수입
4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소해			BL20091231007	(주)신세계이마트 설수집
5	2010-01-02	쇠고기	10.00	수입 (미국)	사태			BL20100101_01	(주)신세계이마트 설수집
6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고기스튜디오
7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고기스튜디오
8	2010-01-02	쇠고기	30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주)한글유통 (031-444-5678)
9	2010-01-01	쇠고기	10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민들레푸드
10	2010-01-01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고기스튜디오
11	2010-01-01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고기스튜디오
12	2010-01-01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주)고기스튜디오
13	2010-01-01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주)고기스튜디오

1/1

6)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매입관리 화면으로 복귀한다.

다. 자동 매입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매입관리 > 자동매입

매입등록(자동)

로그아웃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입)** 식육포장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매입관리 매입반출 매입현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일괄등록(역셀)

11 거래내역(매입) > 매입관리

매입기간: 2010-02-01 ~ 2010-12-08 확정여부: ==전체==

매입처: [검색]

입고처: 0066010 (주)견우마을

매입내역

번호	매입일자	매입번호	매입처명	입고처	확정상태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02-05	00014	(주)신세계푸드		미확정	2010-02-05	확정
2	2010-02-04	00003	(주)신세계푸드		미확정	2010-02-04	확정
3	2010-02-03	00003	(주)신세계푸드		미확정	2010-02-03	확정
4	2010-02-03	00001	(주)신세계푸드	(주)견우마을	확정	2010-02-03	
5	2010-02-02	00003	(주)신세계푸드	(주)견우마을	확정	2010-02-02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7603000905	냉동쇠고기	안심	503	10,865.94	미국	HJUSCLGBA24975107
2	807603000905	냉동쇠고기	등심	500	1,080.00	미국	HJUSCLGBA24975107
3	807603000905	냉동쇠고기	채끝	100	1,000.00	미국	HJUSCLGBA24975107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에게 매입처에서 등록한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매입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화면으로 매입 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확정처리를 통하여 매입내역을 등록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입기간	매입확정을 위한 해당 매입내역 상의 거래일을 입력	필수
확정여부	매입내역 항목의 확정여부 구분(전체/확정/미확정)	
매입처	매입내역을 등록한 대상 매입처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매입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입처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확정여부는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의 매입기간 항목에 매입내역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 [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매입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매입내역 확정 작업을 위하여 확정여부 항목을 미확정으로 선택한다.(매입확정 내역 조회 시, 확정으로 선택하고 조회한다.)
- ③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가 조회되면 매입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매입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입처 항목(매입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④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확정/미확정 리스트를 조회한다.
- ⑤ 입고처 항목에 입고처 명 혹은 입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Enter** 키를 누르면 조회된 입고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입고처 관리번호와 입고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입고처가 조회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고처들이 조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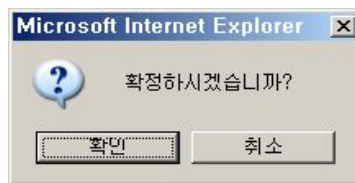
또한 입고처 항목에 입고처 명 혹은 입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돋보기]** 을 클릭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고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입고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입고처 항목(입고처 명, 입고처관리번호)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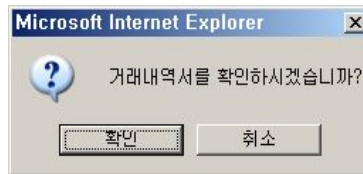
3) 확정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내역을 조회한다.
- ② 입고처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된 매입내역(㉡)에서 미확정된 매입내역을 선택한 후, **확정** 버튼을 클릭한다.



확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미확정 매입내역을 확정 처리한다. 단, 확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 ③ 매입확정 작업을 완료하면, 거래내역서 확인 메시지가 호출된다.



거래내역서 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거래내역서 출력화면이 호출된다. 단, [취소]를 클릭하면 작업이 취소된다.

- ④ 거래내역서 확인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거래내역서를 출력한다.

http://211.232.173.132:7401/oz/ozviewer/bmsViewer.jsp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12.22>

거래내역서

판매업소명 (상징판매)

번호	거래연월일	식품 포장목의 종류	물량 (Kg)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선하승권번호)	매입처
1	2010-01-03	쇠고기	20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민들레푸드
2	2010-01-02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삼성수입
3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삼성수입
4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소혜			BL20091231007	(주)신세계이마트 성수점
5	2010-01-02	쇠고기	10.00	수입 (미국)	사태			BL20100101_01	(주)신세계이마트 성수점
6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고기스토타
7	2010-01-02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고기스토타
8	2010-01-02	쇠고기	30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주)한중유통 (031-444-5678)
9	2010-01-01	쇠고기	100.00	수입 (미국)	갈비			EGLV415927154177	민들레푸드
10	2010-01-01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고기스토타
11	2010-01-01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고기스토타
12	2010-01-01	쇠고기	-4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7	(주)고기스토타
13	2010-01-01	쇠고기	-20.00	수입 (미국)	안심			EGLV415927154178	(주)고기스토타

1/1

- 4) 확정 작업 완료 후, 조회조건(㉠)(매입기간, 매입처, 조회구분)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확정 리스트를 조회한 후, 조회 결과에 대하여 확정 작업의 정상 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라. 매입 반품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매입반품

매입반품내역관리

수입유통식별정보 | **거래내역(매입)** | 식육포장 | 거래내역(매출) | 재고관리 | 기준정보

매입관리 | 매입반품 | 매입현황 | 거래내역서 |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매입반품 > 거래내역(매입) > 매입반품

반품기간: 2010-01-01 ~ 2010-12-08 | 등록구분: --전체--

매입처: [검색]

조회 | 수기매입반품 | 초기화

매입반품현황

번호	반품일자	반품번호	매입처명	입고처	등록구분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02-03	00003	(주)신세계푸드	(주)견우마을	수기등록	2010-02-03	수정 삭제
2	2010-01-25	00006	(주)신세계푸드	(주)견우마을	수기등록	2010-01-25	수정 삭제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안심살	1	10.00	호주	MAEUA14217503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매입한 수입쇠고기를 반품하였을 경우 매입반품기간 내 매입처로 반품한 매입반품 내역을 관리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반품기간	등록된 반품내역을 일자 기준으로 조회하기 위한 기간	필수
등록구분	수입최고기를 매입등록한 방법을 선택	
매입처	수입최고기를 매입한 업체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 OR 사업장명)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반품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입처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등록구분은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㉟)의 반품기간 항목에 매입반품내역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반품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조회조건(㉟)의 등록구분(수기등록, 자동매입, 일괄등록, 웹서비스)을 선택한다.
- ③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가 조회되면 매입처 조회 팝업창이 띄워지면서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매입처 조회 팝업 창이 띄워지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입처 항목(매입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④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입처의 매입반품내역(반품일자, 반품번호, 매입처명, 입고처, 등록일자)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 ⑤ 하단(㉡)에 조회된 매입반품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를 보여준다.

3) 등록

- ① 신규 매입반품 내역을 등록할 경우, **수기매입반품**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반품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수정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반품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입반품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매입반품 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5) 삭제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 반품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입반품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마. 매입 현황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매입현황

로그아웃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입)** 식육포장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매입관리 매입반품 매입현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입괄등록(역셀)

매입현황 거래내역(매입) > 매입현황

* 거래기간 2010-02-01 ~ 2010-12-08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거래구분 부위

파일내려받기 조회 출력 초기화

매입현황 총 17건

번호	구분	거래일자	매입처명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정상	2010-02-05	견우물류	800601000033	냉장쇠고기	갈비	1	33.00	호주	SUDU397002324018
2	정상	2010-02-05	(주)신세계푸드	800601000033	냉장쇠고기	갈비	1	1.00	호주	SUDU397002324018
3	정상	2010-02-05	견우물류	807601000055	냉장 쇠고기	살치살	4	10.00	호주	988438416
4	정상	2010-02-05	견우물류	807601000055	냉장 쇠고기	채끝살	1	2.00	호주	988438416
5	정상	2010-02-05	견우물류	807602000577	냉동 쇠고기	살치살	2	10.00	뉴질랜드	988438417
6	정상	2010-02-05	(주)신세계푸드	807603001061	냉장쇠고기	안심	50	1,000.00	호주	SUDU399002382046
7	정상	2010-02-05	(주)신세계푸드	807603001061	냉장쇠고기	등심	30	654.00	호주	SUDU399002382046
8	정상	2010-02-05	(주)신세계푸드	807603001061	냉장쇠고기	채끝	55	1,199.00	호주	SUDU399002382046
9	정상	2010-02-03	(주)신세계푸드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도	1	12.00	호주	SYD66969
10	반품	2010-02-03	(주)신세계푸드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도	-2	-10.00	호주	SYD66969

1 2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해당 거래기간 동안 매입 또는 반품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입처 별로 해당 매입내역을 조회 및 출력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거래기간	등록된 매입/반품내역을 일자 별 조회하기 위한 기간	필수
거래구분	정상 및 반품 거래 구분 (전체/정상/반품)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입 또는 반품 당시 해당 수입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 식별번호 12자리	
품명코드	매입/반품한 쇠고기의 품명 코드 정보	
품명	매입/반품한 쇠고기의 품명 (냉동/냉장 쇠고기 등)	
부위	매입/반품한 쇠고기의 부위 (등심/안심/목살 등)	
상세부위	부위의 상세부위 (본갈비/참갈비/꽃갈비 등)	
매입처	매입/반품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대상 매입처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거래기간 항목을 당월 1일부터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매입처 항목은 데이터를 지우고 거래구분, 부위는 전체로 선택된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의 거래기간 항목에 매입현황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거래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거래구분 항목에 조회하고자 하는 매입내역과 관련한 거래 형태(전체/정상/반품) 값을 입력한다.
- ③ 조회하고자하는 조건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 항목을 입력한다.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매입내역을 조회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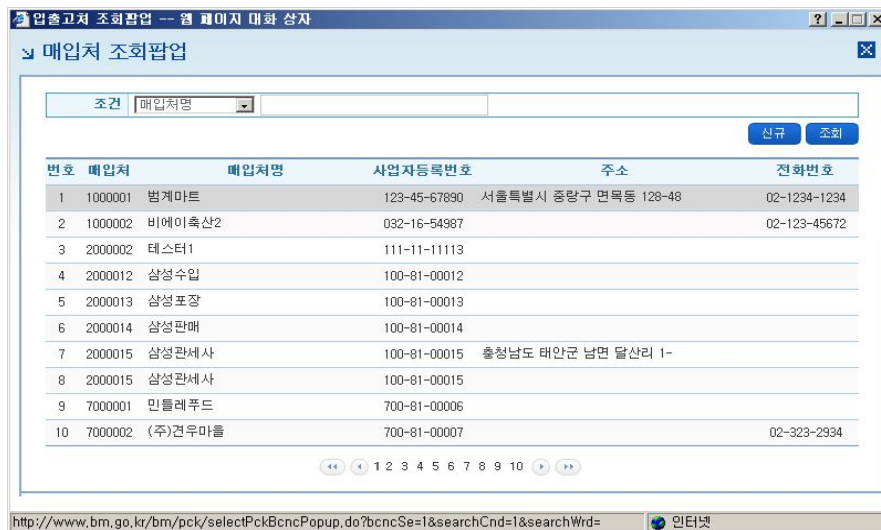
위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다.



품명 조회 시, 검색 [🔍]을 클릭하여 품목 조회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품목을 선택하여 품명을 입력한다.

- ④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입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입처가 조회되면 매입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입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매입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입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입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입처 항목(매입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⑤ 조회 결과에 일련번호 항목의 조회 여부에 따라, 조회구분 항목을 체크한다.
- ⑥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입처의 매입현황(구분, 거래일자, 매입처명, 수입유통식별번호, 일련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3) 출력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현황 내역(㉣)을 조회한다.
- ② 매입현황 조회 후, 매입현황 조회 결과를 출력할 경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매입현황을 출력한다.

4) 파일내려받기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현황 내역(㉣)을 조회한다.
- ② 매입현황 조회 후, 매입현황 조회 결과를 출력할 경우, **파일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매입현황을 TEXT 형식의 파일로 다운 받는다.



바.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입) >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거래내역(매입)',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and '기준정보'. Below these, there are sub-tabs for '매입관리', '매입반품', '매입현황', '거래내역서', and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거래내역일괄등록(엑셀)' and contains a search bar for '거래내역 파일' with a '파일업기' button. Below this is a section for '엑셀내역' with a summary table and a detailed transaction table.

번호	매입매출일자	거래구분	반종구분	매입매출처	입출고처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1	2009-12-05	매입	정상			등심	70		
2	2009-12-05	매입	정상	1008100003		안심	15		
3	2009-12-05	매입	정상	1008100003		안심	15		
4	2009-12-05	매입	반품	1008100003		안심	15		
5	2009-12-05	매입	정상	1008100003		안심	15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일정 기간 내, 사용자가 거래한 해당 거래내역을 파일 업로드하여 거래내역 등록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거래내역파일	일정 기간내 해당 거래내역을 저장한 등록 파일	

3. 업무설명

1) 등록

- ① 거래내역 파일찾기 화면(㉟)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탐색 창을 호출한다.
- ② 거래내역일괄등록을 위한 해당 거래내역 등록 파일을 선택한다.
- ③ 거래내역 파일 선택 후,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읽어온다.
- ④ 거래내역 파일을 읽은 후, 화면(㊸)에 표시된 거래내역 건수(전체/정상/오류)와 거래내역 리스트를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내역을 등록한다.

2) 양식 다운로드

- ① 거래내역 파일찾기 화면(㉟)에서 **엑셀파일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내역 등록을 위한 엑셀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5 거래내역(매출)

가. 매출관리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매출관리

로그아웃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거래내역(매입)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매출관리 매출반품 매출현황 식육판매표지판출력 양수양도일괄등록 묶음번호관리

매출관리

거래내역(매출) > 매출관리

* 매출기간 2010-11-01 - 2010-12-09 등록구분 ==전체==

매출처

조회 수기매출 초기화

매출현황

번호	매출일자	매출번호	매출처명	출고처	등록구분	등록일자	수정	삭제	명세서
1	2010-12-02	00008	(군)대성	유상병장	일괄등록	2010-12-02	수정	삭제	명세서
2	2010-11-19	00001	남양섬유	대구정육센터	수기등록	2010-11-19	수정	삭제	명세서
3	2010-11-10	00001	강동냉장(주)강동제2냉장	(주)신세계이마트강...	수기등록	2010-11-10	수정	삭제	명세서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0101000121	냉동 쇠고기	안심	1	2.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매출한 수입쇠고기의 매출내역 관리화면으로 해당 기간 내 매출처로 매출한 수입쇠고기 내역을 조회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매출기간	기 등록된 일자별 매출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매출일자 입력	필수
등록구분	등록방법(수기등록, 자동매입, 일괄등록, 웹서비스) 선택	
매출처	수입쇠고기를 매출한 업체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번호 OR 사업장명)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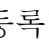
- ① 매출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출처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등록구분은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의 매출기간 항목에 매출내역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  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매출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매출처 항목에 매입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출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출처가 조회되면 매출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출처 항목에 매출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매출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출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출처 항목(매출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③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출처의 매출내역(매출일자, 매출번호, 매출처명, 출고처, 등록일자)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 ④ 하단(㉡)에 조회된 매출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를 보여준다.

3) 등록

- ① 신규 매출 내역을 등록할 경우, **수기매출**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수정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출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나. 매출반품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매출반품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매출반품' (Sales Return). It features a search form with fields for '반품기간' (Return Period) from 2010-11-01 to 2010-12-09, and a '등록구분' (Registration Category) dropdown set to '전체'. Below the search form is a table of return records. The table has columns for '번호' (No.), '반품일자' (Return Date), '반품번호' (Return No.), '매출처명' (Sales Place Name), '출고처' (Shipment Place), '등록구분' (Registration Category), '등록일자' (Registration Date), and '작업구분' (Action Category). One record is visible with the following data:

번호	반품일자	반품번호	매출처명	출고처	등록구분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12-02	00009	(군)대성	유성농장	일괄등록	2010-12-02	수정 삭제

Below the table is a section for '상세내역' (Detailed Record) with a table showing specific return details: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9002000110	냉동 쇠고기	등심	1	10.00	뉴질랜드	BL20101020-1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매출한 수입쇠고기가 반품되었을 경우 매출반품기간 내 매출처로부터 반품된 매출반품내역을 관리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반품기간	등록된 반품내역을 일자 기준으로 조회하기 위한 기간	필수
등록구분	등록방법(수기등록, 자동매입, 일괄등록, 웹서비스) 선택	
매출처	수입쇠고기를 반품할 업체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or 사업장명)을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반품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매출처는 데이터를 지워주고 등록구분은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 ① 조회조건(㉠)의 반품기간 항목에 매출반품내역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반품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매출처 항목에 매출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출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출처가 조회되면 매출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출처 항목에 매출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 을 클릭하면 매출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출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출처 항목(매출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③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출처의 매출반품내역(매출일자, 반품번호, 매출처명, 출고처, 등록일자)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 ④ 하단(㉡)에 조회된 매출반품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을 보여준다.

3) 등록

- ① 신규 매출반품 내역을 등록할 경우, **수기매출반품**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반품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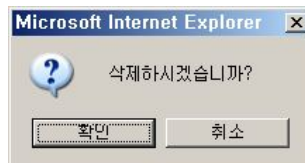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반품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출반품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매출반품수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5) 삭제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반품 내역을 조회한다.
- ② 화면에 표시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매출반품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다. 매출 현황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매출현황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매출현황' (Sales Status) and is enclosed in a red dashed box. At the top of this section, there is a search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 거래기간 (Transaction Date): 2010-12-01 to 2010-12-09
- 수입유통식별번호 (Import Distribution Identification Number): [Blank]
- 품명 (Product Name): [Blank]
- 부위 (Part): [Blank]
- 거래구분 (Transaction Category): ==전체== (All)
- 부위 (Part): ==전체== (All)

Below the search form, there are buttons for '조회' (Search), '출력' (Print), and '추가하기' (Add). The main data is presented in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lumns: 번호 (No.), 구분 (Category), 거래일자 (Transaction Date), 매출처명 (Sales Name), 수입유통식별번호 (Import Distribution Identification Number), 품명 (Product Name), 부위명 (Part Name), 수량(Box) (Quantity), 총량(Kg) (Total Weight), 원산지 (Origin), and B/L No.

번호	구분	거래일자	매출처명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총량(Kg)	원산지	B/L No
1	반품	2010-12-02	(군)대성	809002000110	냉동 쇠고기	등심	-1	-10.00	뉴질랜드	BL20101020-1
2	정상	2010-12-02	(군)대성	809002000110	냉동 쇠고기	갈비	1	10.00	뉴질랜드	BL20101020-1

At the bottom of the table, there is a page indicator showing '1'.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사용자가 해당 거래기간 동안 매출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출처 별로 해당 매출내역을 조회 및 출력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거래기간	등록된 매출/반품내역을 일자 별 조회하기 위한 기간	필수
거래구분	정상 및 반품 거래 구분 (전체/정상/반품)	
수입유통식별번호	매출 당시 해당 수입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 식별번호 12자리	
품명	매출/반품한 쇠고기의 품명 (냉동/냉장 쇠고기 등)	
부위	매출/반품한 쇠고기의 부위 (등심/안심/목살 등)	
매출처	매출/반품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대상 매출처를 입력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거래기간 항목을 당월 1일부터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매출처 항목은 데이터를 지우고 거래구분, 부위는 전체인 상태로 설정한다.

2)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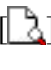
- ① 조회조건(㉠)의 거래기간 항목에 매출현황 조회를 위하여 해당 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팝업을 사용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거래기간 항목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각각 입력한다.

- ② 거래구분 항목에 조회하고자 하는 매출내역과 관련한 거래 형태(전체/정상/반품) 값을 입력한다.
- ③ 조회하고자하는 조건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 항목을 입력한다.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매출내역을 조회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다.



품명 조회 시, 검색  을 클릭하여 품목 조회 팝업창을 호출하여 해당 품목을 선택하여 품명을 입력한다.

- ④ 매출처 항목에 매출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키를 누르면 조회된 매출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매출처가 조회되면 매출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매출처 항목에 매출처 명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매출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매출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매출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매출처 항목(매출처 명,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한다.

- ⑤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결과에 해당하는 대상 매출처의 매출현황(구분, 거래일자, 매출처명, 수입유통식별번호, 일련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2) 출력

- ①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출현황 내역(㉡)을 조회한다.
 ② 매출현황 조회 후, 매출현황 조회 결과를 출력할 경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매출현황을 출력한다.

상상 판매

거래기간 : 2010-01-01 ~ 2010-01-03

출력일시 : 2010-01-03 14:01

번호	구분	매출일자	매출처명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Box)	중량 (kg)	원산지	B/L No
1	정상	2010-01-02	고기스토마	8001 01 000101	냉동쇠고기	안심	1	90.00	미국	EGLV415327154177
2	정상	2010-01-02	고기스토마	8001 01 000111	냉동쇠고기	갈비	3	310.00	미국	EGLV415327154177
3	정상	2010-01-02	고기스토마	8001 01 000121	냉동쇠고기	안심	1	20.00	미국	EGLV415327154178
총수량/중량							5.00	420.00		

1/1

라. 묶음번호 관리

❖ 찾아가기 : 거래내역(매출) > 묶음번호관리

묶음번호관리

거래내역(매입) | **거래내역(매출)** | 재고관리 | 기준정보

매출관리 | 매출반품 | 매출현황 | 식육판매표지판출력 | 양수양도일괄등록 | 묶음번호관리

거래내역(매출) > 묶음번호관리

① 묶음번호기간: 2010-11-01 ~ 2010-12-09

② 묶음번호내역

번호	묶음일자	묶음번호	묶음건수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12-02	A41109851288800010120211	2	2010-12-02	수정 삭제
2	2010-12-01	A41109851288800010120101	2	2010-12-01	수정 삭제

③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0101000886	냉동쇠고기	안심	1	12.00	호주	HDMUAUBU1106358
2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채끝	1	12.00	호주	SYD66969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2개 이상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묶어서 매출을 할 경우 동일 원산지의 수입유통식별번호로 구성된 묶음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묶음번호기간	묶음번호 일자	필수
묶음번호	수입최고기의 묶음번호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항목(㉠)의 묶음번호 기간을 직접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묶음번호 기간을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묶음번호기간 항목을 각각 입력한다.

- ② 선택적으로 묶음번호를 입력한다.
(묶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회대상이 된다.)
- ③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의 묶음번호내역(묶음일자, 묶음번호, 묶음건수, 등록일자)을 조회한다.
- ④ 조회된 묶음번호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항목(㉣)의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이 조회된다.

2) 등록

- ① 신규 묶음번호내역을 등록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3)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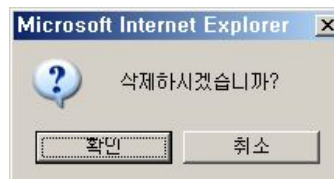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 후, 리스트 중 수정할 항목(㉠)의 작업구분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묶음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 결과 리스트 중 삭제할 항목(㉠)의 작업구분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6 재고 관리

가. 재고이동관리

❖ 찾아가기 : 재고관리 > 재고이동관리

로그아웃 |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수입유통식별정보 거래내역(매입) 식육포장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재고이동관리 재고이동현황 재고이동일괄등록(약셀) 재고조정관리 재고조정현황 현재고현황조회 재고조정내역일괄등록

재고이동관리

재고이동기간 2010-01-01 - 2010-12-08

출고처 [입고처]

조회 신규 초기화

재고이동내역

번호	재고이동일자	재고이동번호	출고처	입고처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12-03	00001	광명 금 마트	경우물류	2010-12-03	수정 삭제
2	2010-01-25	00007	주식회사 조선냉장	(주)견우마을	2010-01-25	수정 삭제
3	2010-01-25	00006	(주)견우마을	주식회사 조선냉장	2010-01-25	수정 삭제
4	2010-01-25	00005	(주)견우마을	주식회사 조선냉장	2010-01-25	수정 삭제

1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안심살	2	20.00	호주	MAEUA14217503
2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꽃등심살	3	30.00	호주	MAEUA14217503

완료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창고를 관리하는 경우 사용되며 창고와 창고간, 창고와 사업장간에 수입쇠고기의 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동내역을 등록 관리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재고이동기간	재고이동 일자	
출고처	재고이동이 발생하여 재고가 출고된 창고	
입고처	재고이동이 발생하여 재고가 입고된 창고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재고이동기간 항목을 현재일자로 설정하고 출고처, 입고처 데이터를 지워진 상태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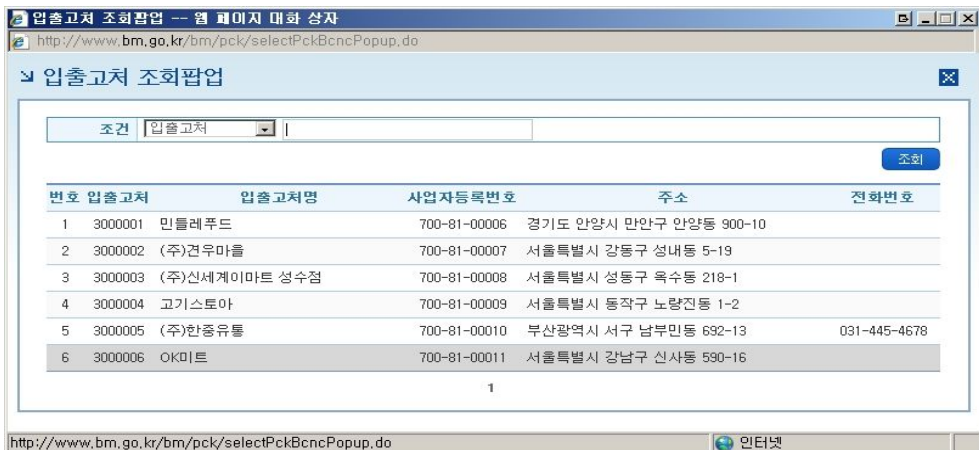
2) 조회

- ① 항목(㉠)의 재고이동 기간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팝업을 재고이동 기간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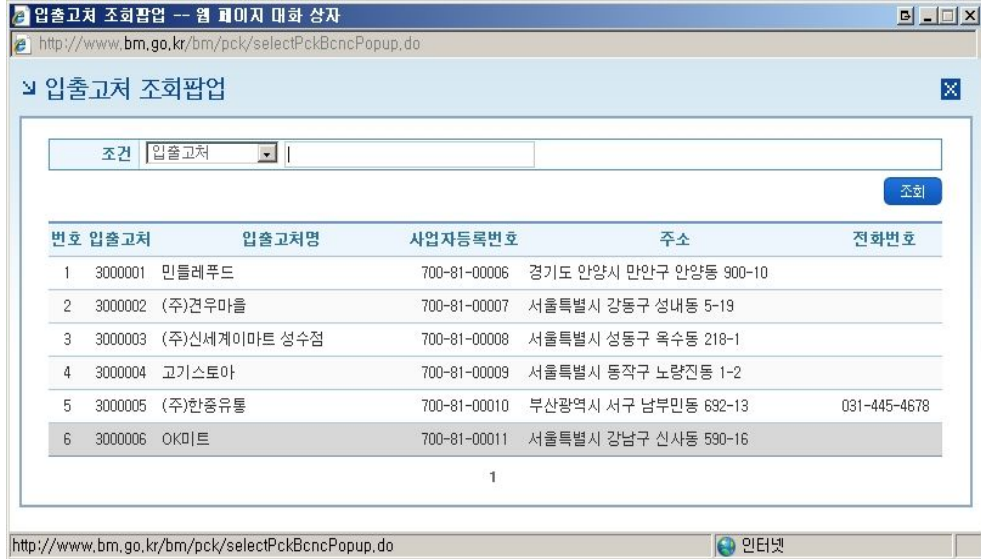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재고이동기간 항목을 각각 입력한다.

- ② 출고처 항목에 창고코드 또는 창고명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하거나, 검색 [🔍]을 클릭하여 창고조회팝업을 호출한다.



- ③ 조회된 창고내역에서 입력할 창고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창고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동선택된다.)
- ④ 입고처 항목에 창고코드 또는 창고명을 입력한 후 **[Tab]**키를 입력하거나, 검색 **[F3]**을 클릭하여 창고조회팝업을 호출한다.



- ⑤ 조회된 창고내역에서 입력할 창고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창고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동선택된다.)
- ⑥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의 재고이동내역(재고이동일자, 출고처, 입고처, 등록일자)이 조회된다.
- ⑦ 조회된 재고이동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항목(Ⓢ)의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이 조회된다.

2) 등록

- ① 신규 재고이동내역을 등록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재고이동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3) 수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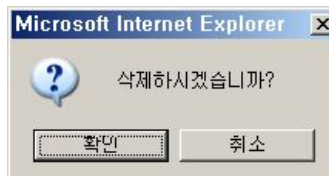
- ② 조회 후, 리스트 중 수정할 항목(㉔)의 작업구분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재고이동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② 조회 결과 리스트 중 삭제할 항목(㉔)의 작업구분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나. 재고조정관리

❖ 찾아가기 : 재고관리 > 재고조정관리

재고조정관리

재고조정참고 | 3000002 | (주)견우마을 | 재고조정일자 | 2010-01-07 | 조회 | 초기화

저장/삭제

*수입유통식별번호 | 120000000001 | 품명 | 냉동부산물 | *부위 | 등심 | 등심

*증감구분 | 재고증가 | *수량(Box) | 1 | *증량(Kg) | 12 | *조정사유 | 초기재고

현재고수량 (Box) | 2 | 현재고증량(Kg) | 24 | 원산지 | 미국 | B/L No | EGLV415927154172

저장 | 삭제 | 초기화

재고조정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증감구분	수량(Box)	증량(Kg)	조정사유	원산지	B/L No
1	120000000001	냉동부산물	등심	재고증가	1	12.00	초기재고	미국	EGLV415927154172
2	026103000979	냉장쇠고기	채끝	재고증가	1	12.00	초기재고	미국	999999

저장 | 삭제 | 초기화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일반적인 거래(입출고)이 외에 재고의 변동이 발생하여 재고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조정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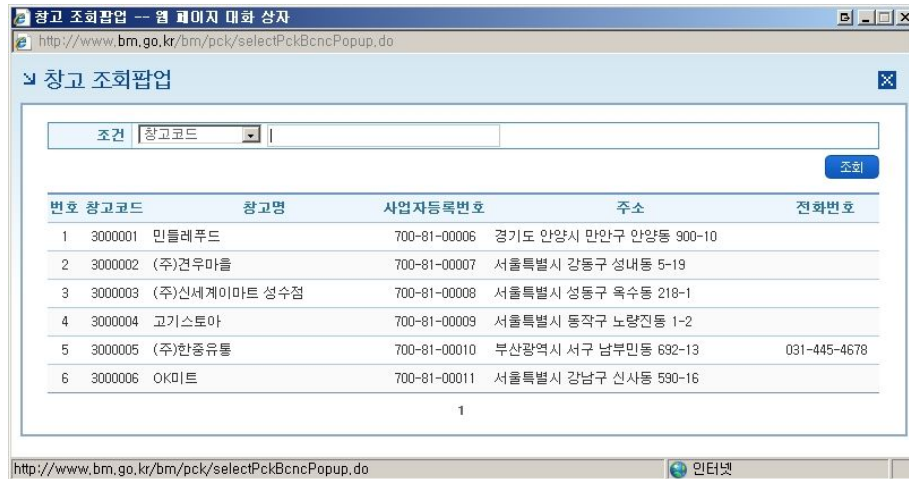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재고조정창고	재고내역의 변경이 발생한 창고 (기본값 : 소속사업장)	필수
재고조정일자	재고가 변경된 일자 (기본값 : 현재일자)	필수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필수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	필수
증감구분	재고의 변경이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선택(재고손실, 재고증감)	필수
수량	재고가 조정되는 수입쇠고기의 박스수량	필수
중량	재고가 조정되는 수입쇠고기의 중량(Kg)	필수
조정사유	재고가 변경된 사유를 선택(초기재고, 자가소비, 소비자판매, 재고조사, 위해폐기, 자체폐기, 기타.)	필수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항목(㉠)의 재고조정창고 항목에 창고코드 또는 창고명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입력하거나, 검색 **[🔍]**을 클릭하여 창고조회팝업을 호출한다.



- ② 조회된 창고내역에서 입력할 창고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창고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동선택된다.)
- ③ 재고조정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재고조정일자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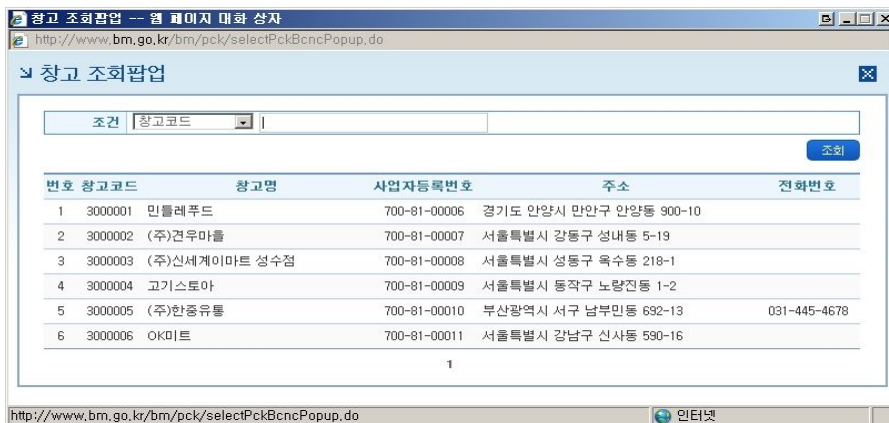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재고이동일자 항목을 입력한다.

- ④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㉔)의 재고조정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 증감구분, 조정수량, 조정중량, 조정사유, 원산지, B/L No)을 조회한다.

2) 등록

- ① 항목(㉔)의 재고조정창고 항목에 창고코드 또는 창고명을 입력한 후 **Enter** 키를 입력하거나, 검색 을 클릭하여 창고조회팝업을 호출한다.



- ② 조회된 창고내역에서 입력할 창고를 더블클릭하여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창고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동선택된다.)
- ③ 재고조정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재고조정일자를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재고이동일자 항목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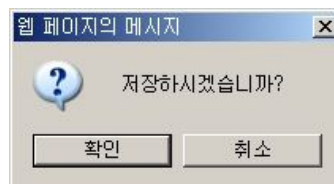
- ④ 항목(Ⓒ)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 또는 **[↵]**키를 누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 한후 품명, 부위List, 원산지, B/L No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현재 보유중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검색 **[🔍]** 을 클릭하면 참고별로 등록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조회된다.

번호	참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삼성포장	120000000001	냉동 쇠고기	안심살	1	1.00	미국	BL_2010_03_22_02
2	삼성포장	120000000001	냉동 쇠고기	윗등심살	2	2.00	미국	BL_2010_03_22_02
3	삼성포장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깃살	-15	-48.00	호주	SYD66969
4	삼성포장	800603000045	냉동쇠고기	설도	202	1895.00	호주	SYD66969
5	삼성포장	807601000024	냉동쇠고기	채끝	-12	-345.00	호주	MAEUA14217502

이 때 조회된 수입유통식별번호중 중 하나를 클릭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항목을 입력한다.

- ⑤ 부위를 선택한다.
(부위상세는 부위 선택 후에 변경가능하며 필요치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부위에 해당하는 현재고수량, 현재고중량이 조회된다.)
- ⑥ 증감구분, 조정수량, 조정중량, 조정사유를 입력한 한다.
- ⑦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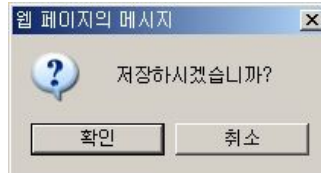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재고조정내역을 등록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3) 수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수정 할 자료를 선택한다.
- ③ 항목(Ⓢ)의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한다.
-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재고조정내역을 수정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삭제 할 자료를 선택한다.
- ③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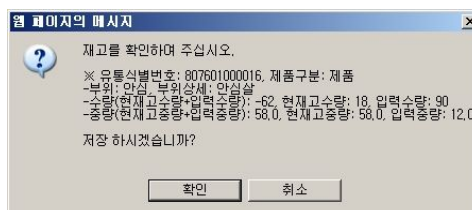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재고조정내역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TIP

특징

- 증감구분이 '재고손실'인 경우 현재고수량 보다 재고조정수량을 크게 입력할 수 없다.
- 증감구분이 '재고손실'인 경우 현재고중량 보다 재고조정중량을 크게 입력할 수 없다.
- 저장시 재고조정될 수입쇠고기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메시지가 나타난다.



7 식육포장

가. 가공투입관리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가공투입관리

The screenshot shows the '가공투입관리' (Processing Input Management) interface in a web browser. The page title is '가공투입내역관리 - Windows Internet Explorer'. The URL is 'http://www.bm.go.kr/bm/pck/selectPrccsInptList.do'. The page features a navigation menu with '가공투입관리' selecte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가공투입관리' and includes a search bar for '가공투입일자' (Processing Input Date) with the value '2010-01-22'. Below this is a '저장/삭제' (Save/Delete) form with fields for '수입유통식별번호' (Import Distribution Identification Number), '품명' (Product Name), '부위' (Part), '수량(Box)' (Quantity), '중량(Kg)' (Weight), '원산지' (Origin), and 'B/L No'. The '가공투입내역' (Processing Input History) table lists the following entries: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부위명	수량(Box)	중량(Kg)	원산지	B/L No
1	807601000024	냉동쇠고기	목심	2	20.00	호주	MAEUA14217502
2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등심	10	40.00	호주	MAEUA14217503
3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횡등심살	5	75.00	호주	MAEUA14217503
4	807601000016	냉동쇠고기	안심살	5	75.00	호주	MAEUA14217503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가공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투입되는 수입쇠고기 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가공투입일자	가공투입된 일자 (기본값 : 현재일자)	필수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필수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	필수
수량	가공 투입되는 수입쇠고기의 박스수량	필수
중량	가공 투입되는 수입쇠고기의 중량(Kg)	필수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항목(㉠) 가공투입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가공투입일자를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떠난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가공투입일자를 입력한다.

-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항목(㉡)가공투입내역(수입유통 식별번호, 품명, 부위, 수량, 중량, 원산지, B/L No)을 조회한다.

2) 등록

- ① 항목(㉠)의 가공투입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가공투입일자를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떠난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가공투입일자를 입력한다.

- ② 항목(Ⓒ)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Enter]**키 또는 **[↔]**키를 누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 한후 품명, 부위List, 원산지, B/L No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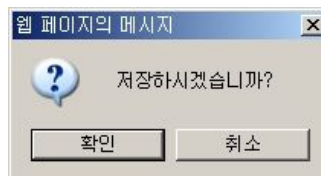
현재 보유중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검색 **[🔍]** 을 클릭하면 참고별로 등록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수입유통식별번호중 중 하나를 클릭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항목을 입력한다.

- ③ 항목(Ⓒ)의 부위, 수량, 중량을 입력한다.
(부위상세와 부위명칭은 부위 선택 후에 변경가능하며 필요치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가공투입내역을 등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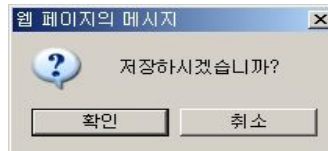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3) 수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항목(Ⓢ)의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수정 할 자료를 선택한다.
- ③ 항목(Ⓢ)의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 입력한다.
- ④ 정정사유를 입력한다.
- ⑤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가공투입내역을 수정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 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항목(Ⓢ)의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삭제 할 자료를 선택한다.
- ③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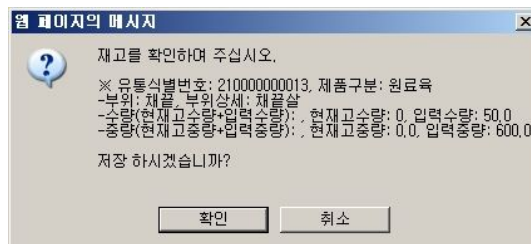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가공투입내역을 삭제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TIP

특징

- 저장시 가공투입될 수입쇠고기의 재고가 부족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메시지가 나타난다.



나. 가공생산관리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가공생산관리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가공생산관리' (Processing Production Management). It features a form for entering processing details and a table for production records.

가공생산관리

* 가공생산일자: 2010-01-22

저장/삭제

* 수입유통식별번호 (류음번호): 807601000016

* 제품명: 국거리(안심)

* 부위: 안심

* 생산수량: 10

* 생산중량 (Kg): 60.00

가공생산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류음번호)	제품명	부위명	생산수량	생산중량(Kg)
1	807601000024	국거리(목심)	목심	3	15.00
2	807601000016	국거리(안심)	안심살	10	60.00
3	807601000016	로스구이용(등심)	윗등심살	20	100.00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판매·유통 업체의 주문을 받아 규격에 맞추어 채포장하여 제품 가공생산내역을 관리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가공생산일자	가공생산된 일자 (기본값 : 현재일자)	필수
수입유통식별번호 (묶음번호)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	필수
제품명	수입쇠고기의 제품명	필수
부위	수입쇠고기의 부위	필수
수량	수입쇠고기의 수량	필수
중량	수입쇠고기의 중량(Kg)	필수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항목(㉠)의 가공생산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가공생산일자를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가공생산일자를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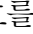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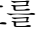

-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의 가공생산내역(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 부위, 생산중량)을 조회한다.

2) 등록

- ① 항목(㉠)의 가공생산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가공생산일자를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가공생산일자를 입력한다.

- ② 항목(Ⓒ)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한 후 키 또는 키를 누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에 대해서 유효성을 체크 한 후 수입유통식별번호일 때 부위List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묶음번호일 때는 조회하지 않는다.)
현재 보유중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모를 경우 검색 을 클릭하면 참고별로 등록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조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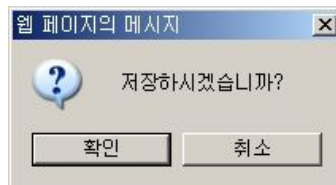
이 때 조회된 수입유통식별번호 중 하나를 클릭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항목을 입력한다.

- ③ 항목(Ⓒ)의 제품명 항목에 제품코드 또는 제품명을 입력한 후 키를 누르거나, 검색 을 클릭하여 제품팝업을 호출한다.



- ④ 조회된 제품내역에서 입력할 제품명을 클릭하여 선택한다.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제품명이 하나인 경우에는 자동 선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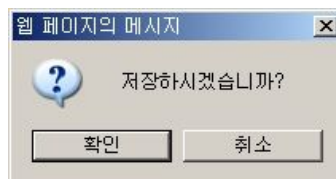
- ⑤ 수입유통식별번호일 때 항목(㉠)의 부위, 생산수량, 생산중량을 입력한다.
(부위상세는 부위 선택 후에 변경가능하며 필요치 않을 경우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묶음번호일 때 부위는 입력받지 않는다.)
- ⑥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생내역을 등록할지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가공생산내역을 등록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제품명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부위명으로 자동 입력된다.)

3) 수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항목(㉠)의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수정 할 자료를 선택한다.
- ③ 항목(㉠)의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 입력한다.
- ④ 정정사유를 입력한다.
- 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생산내역을 수정할지 메시지 박스가 나타난다.



저장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가공생산내역을 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항목(㉠)의 조회된 내역을 클릭하여 삭제 할 자료를 선택한다.

③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가공생산내역을 삭제한다.
저장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다. 가공실적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가공실적

가공실적조회 - Windows Internet Explorer

로그아웃 | 사용자정보보기 | 수입유통식별번호 | Q&A

Meat Watch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거래내역(매입) **식육포장**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기준정보

식육포장 > 가공실적

가공실적

가공생산일자: 2009-12-01 ~ 2010-01-07 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 출력 초기화

번호	가공생산일자	제품명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위	중량(Kg)
1	2010-01-01	목살세트	210000000013	채끝	12.00
2	2009-12-27	세트	210000000013	채끝	2.01
3	2009-12-24	소혀	026103000729	기타	90.00
4	2009-12-24	국거리(등심)	026103000737	등심	270.00
5	2009-12-24	LA갈비	026103000753	갈비	180.00
6	2009-12-24	국거리(안심)	026103001060	안심	540.00
7	2009-12-23	갈비세트	210000000013	채끝	20.00
8	2009-12-22	갈	210000000013	채끝	2.00
9	2009-12-22	채끝세트	A41700810000600009121102	채끝	1.00
10	2009-12-21	갈비세트	210000000013	갈비	1,000.00

1 2 3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판매·유통 업체의 주문을 받아 규격에 맞추어 재포장한 가공생산실적을 조회(출력)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가공생산일자	가공생산된 일자	필수
수입유통식별번호 (묶음번호)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또는 묶음번호	

3. 업무설명

- 1) 항목(㉠)의 가공생산일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가공생산일자의 기간을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떠난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가공생산기간 항목을 각각 입력한다.

- 2) 선택적으로 조회조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한다.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회대상이 된다.)
- 3)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의 가공실적내역(가공생산일자,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 부위, 중량)을 조회한다.
- 4) 조회가 완료된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된다.



라. 가공내역일괄등록(엑셀)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가공내역일괄등록(엑셀)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가공(투입/생산)내역을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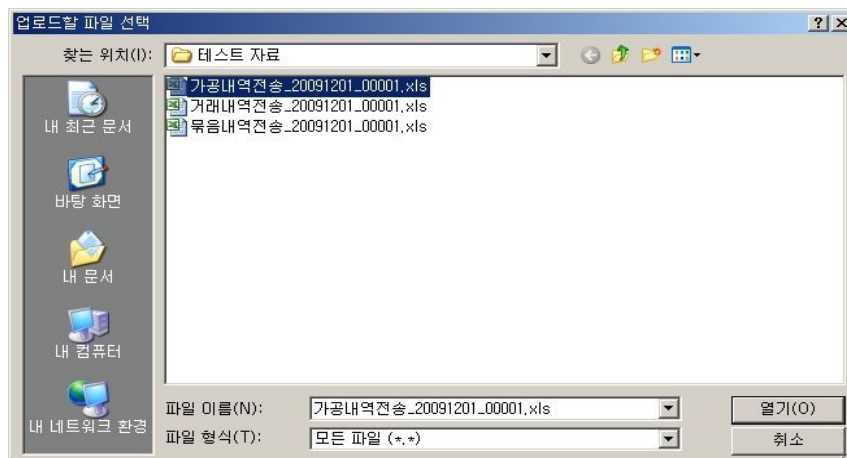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가공내역파일	일정 기간내 해당 가공내역을 저장한 등록 파일	

3. 업무설명

1) 등록

- ① 항목(㉠)의 가공내역일괄등록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탐색 창을 호출한다.



- ② 가공내역 등록 파일을 선택한다.
- ③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읽어온다.
- ④ 가공내역 파일을 읽은 후, 항목(㉡)의 가공내역 건수(전체/정상/오류), 가공내역 전체 수량, 중량 과 가공내역 리스트가 표시된다.
- ⑤ 가공내역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에러내역이 있을경우에 에러메시지를 보여준다.
- ⑦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내역을 등록한다.

2) 양식 다운로드

- ① 항목(㉠)에서 **엑셀파일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내역 등록을 위한 엑셀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마. 묶음번호 관리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묶음번호관리

묶음번호내역

① 묶음번호기간 | 2009-12-24 | - | 2010-01-07 | 묶음번호 | [] | [조회] [신규] [추가화]

번호	묶음일자	묶음번호	묶음건수	등록일자	작업구분
1	2010-01-01	A41100810001100010010101	2	2010-01-01	[수정] [삭제]
② 2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4	2	2009-12-27	[수정] [삭제]
3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3	2	2009-12-27	[수정] [삭제]
4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2	3	2009-12-27	[수정] [삭제]
5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1	2	2009-12-27	[수정] [삭제]
6	2009-12-24	A41100810001100009122402	2	2009-12-23	[수정] [삭제]
7	2009-12-24	A41100810001100009122401	2	2009-12-24	[수정] [삭제]

1

상세내역

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원산지	B/L No
1	800101000111	냉장쇠고기	미국	EGLV415927154177
2	800101000121	냉동쇠고기	미국	EGLV415927154178
3	210000000013	냉동 쇠고기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가공생산 할 때 2개 이상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투입된 재포장 제품을 생산하였을 때 수입 유통식별번호로 구성된 묶음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묶음번호기간	묶음번호 일자	필수
묶음번호	수입쇠고기의 묶음번호	

3. 업무설명

1) 조회

- ① 항목(㉠)의 묶음번호 기간을 직접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묶음번호 기간을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묶음번호기간 항목을 각각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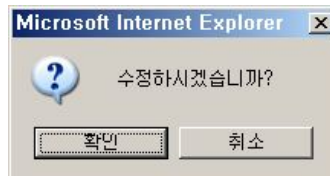
- ② 선택적으로 묶음번호를 입력한다.
(묶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회대상이 된다.)
- ③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의 묶음번호내역(묶음일자, 묶음번호, 묶음건수, 등록일자)을 조회한다.
- ④ 조회된 묶음번호내역 리스트 중, 한 개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항목(㉣)의 상세내역 화면에 선택된 항목의 상세내역 (수입유통식별번호, 품명, 원산지, B/L No)이 조회된다.

2) 등록

- ① 신규 묶음번호내역을 등록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처리한다.

3) 수정

- ① 수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 후, 리스트 중 수정할 항목(☹)의 작업구분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묶음번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수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4) 삭제

- ① 삭제하고자 하는 내역을 '1)조회'기능을 사용하여 조회한다.
- ② 조회 결과 리스트 중 삭제할 항목(☹)의 작업구분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 해당항목을 삭제한다. 삭제 취소할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바. 묶음번호구성내역서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묶음번호구성내역서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묶음번호구성내역서' (Bundle Number Composition History). It features a search filter for '묶음번호기간' (Bundle Number Period) with a date range from 2009-12-01 to 2010-01-07. Below the filter i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번호	묶음일자	묶음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묶음건수
1	2010-01-01	A41100810001100010010101	800101000121	2
2	2010-01-01	A41100810001100010010101	800101000111	2
3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4	800101000121	2
4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4	210000000013	2
5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3	800101000121	2
6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3	210000000013	2
7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2	800101000121	3
8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2	800101000111	3
9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2	210000000013	3
10	2009-12-27	A41100810001100009122701	800101000121	2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등록한 묶음번호 내역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별로 조회(출력)한다.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묶음번호기간	묶음번호 일자	필수
묶음번호	수입쇠고기의 묶음번호	

3. 업무설명

- 1) 항목(㉠)의 묶음번호 기간을 직접입력하거나 달력 팝업을 사용하여 묶음번호 기간을 선택한다.



달력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달력[12]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띄운 후, 해당 일자를 클릭하여 묶음번호기간 항목을 각각 입력한다.

- 2) 선택적으로 묶음번호를 입력한다.
(묶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회대상이 된다.)
- 3)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의 묶음번호구성내역(묶음일자, 묶음번호, 수입 유통식별번호, 묶음건수)을 조회한다.
- 4) 조회가 완료된 후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출력된다.

http://192.168.10.11:7401/oz/viewer50/bmsViewer.jsp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192.168.10.11:7401/oz/viewer50/bmsViewer.jsp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출력일시 : 2009-12-10 21:59

년월일	묶음번호	부위명	수입유통식별번호	구성개체수
2009-12-09	A41100810001100009120903		800101000121 120000000001	2
2009-12-09	A41100810001100009120902		120000000001 120000000001	2
2009-12-08	A41100810001100009120801		800101000111 210000000013 120000000001	3
2009-12-07	A41100810001100009120703		800101000121 210000000013 120000000001	3
2009-12-07	A41100810001100009120701		120000000001 120000000001 120000000001 120000000001 120000000001	5

1 / 2

사. 묶음번호일괄등록(엑셀)

❖ 찾아가기 : 식육포장 > 묶음번호일괄등록(엑셀)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묶음번호내역을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일괄 등록 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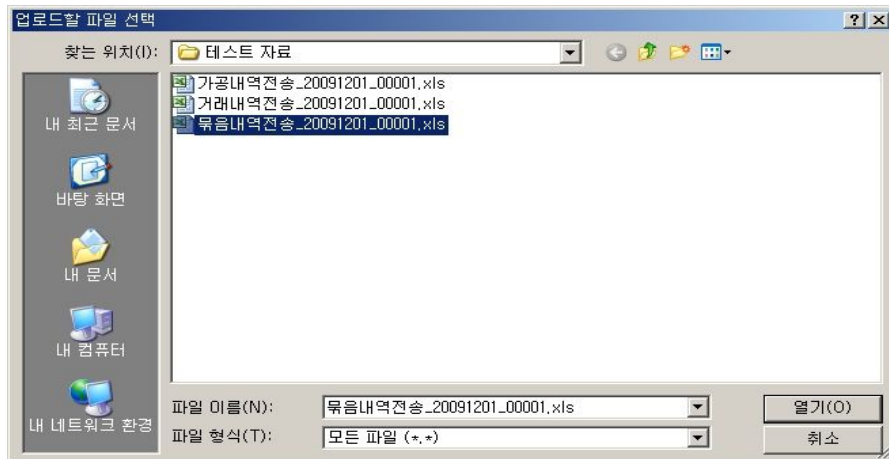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묶음번호내역파일	일정 기간내 해당 묶음번호내역을 저장한 등록 파일	

3. 업무설명

1) 등록

- ① 항목(㉠)의 묶음번호내역일괄등록 화면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탐색 창을 호출한다.



- ② 묶음번호내역 등록 파일을 선택한다.
- ③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읽어온다.
- ④ 묶음번호내역 파일을 읽은 후, 화면에 표시된 항목(㉡)의 묶음내역 건수 (전체/정상/오류)와 묶음내역 목록이 표시된다.
- ⑤ 묶음번호내역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에러내역이 있을 경우에 에러메시지를 보여준다.
- ⑥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내역을 등록한다.

2) 양식 다운로드

- ① 항목(㉢)에서 **엑셀파일 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등록을 위한 엑셀 형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8 기준정보

가. 입출고처 관리

❖ 찾아가기 : 기준정보 > 입출고처관리

The screenshot shows the 'Meat Watch'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거래내역(매입)', '거래내역(매출)', '재고관리', and '기준정보'. The '기준정보' section is active, showing '입출고처관리'. The page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 입출고처관리**: A search bar with '입출고처' and '입출고처구분' (set to '전체'). Buttons for '조회' and '초기화' are present.
- 저장/삭제**: A form for saving or deleting records. It includes fields for '입출고처구분', '입출고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출고 연계번호', and a checkbox for '기본참고여부'. Buttons for '저장', '삭제', and '초기화' are at the bottom.
- 입출고처 현황**: A table listing the current status of import/export locations.

번호	입출고처코드	구분	입출고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출고 연계번호
1	0004072	매장	(주)우성육가공김해점				324-1705	
2	0009145	매장	한일유통				011-9510-2319	
3	9100012	창고	삼성수입	100-81-00012	이종무			9100012
4	9100013	창고	삼성포장	100-81-00013	정영근			9100013
5	9100014	창고	삼성판매	100-81-00014	김종오			9100014
6	9100015	창고	삼성관세사	100-81-00015	손영호			9100015

❖ 업무기능

1. 기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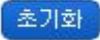
사용자가 거래발생시 실제로 수입고기를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장소를 관리

2. 주요항목


항목	설명	필수 구분
입출고처코드(조회조건)	입출고처에 해당하는 사업장관리 코드	
입출고처명(조회조건)	입출고처에 해당하는 사업장명	
입출고처구분(조회조건)	입출고처 구분(전체/창고/매장)	
입출고처구분(입력항목)	입출고처 구분(창고/매장)	필수
입출고처	입출고처로 등록할 사업장의 사업장관리코드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입출고처로 등록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입출고처로 등록할 사업장의 대표자명	
주소	입출고처로 등록할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입출고처로 등록할 사업장의 전화번호	
연계번호	자체시스템(ASP)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출고처 관리코드	
기본창고여부	수입업자가 냉동전환신고 및 매출등록시 기본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	


3. 업무설명

1) 초기화

- ①  버튼(㉞)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입출고처 관리번호, 입출고처명, 입출고처구분)이 지워진다.

2) 조회

- ① 입출고처 항목에 입출고처 명 혹은 입출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키를 누르면 조회된 입출고처가 한 건일 경우에는 입출고처 관리번호와 입출고처 명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다수의 입출고처가 조회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고처들이 조회된다.

또한, 입고출처 항목에 입출고처 명 혹은 입출고처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을 클릭하면 입출고처 조회 팝업 창이 호출되어 해당 입출고처들이 조회된다.



이 때 조회된 입출고처 중 하나를 클릭하여 입출고처 항목(입출고처 명, 입출고처 관리번호)을 입력한다.

- ② 입출고처구분 항목에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구분 값(전체/창고/매장)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입출고처 목록이 조회된다.

3) 초기화

- ①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삭제 화면(㉠)에 있는 등록항목(입출고처구분, 입출고처 관리번호, 입출고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연계번호, 기본창고여부)이 지원지고 신규 입출고처를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4) 등록

- ① 신규 입출고처 등록 시, 저장/삭제 화면(㉠)에서 입출고처 구분, 입출고처, 연계번호, 기본창고여부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는 입출고처 선택 시 자동으로 설정됨)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등록한다.

5) 삭제

- ① 등록된 입출고처를 삭제할 경우, 조회된 입출고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입출고처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삭제확인 메시지 박스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해당 입출고처를 삭제한다.
단, 삭제 취소할 경우는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한다.

제 6 장

시스템 질의·응답

1. 회원가입
2. 쇠고기수입업자
3. 식육포장처리업자
4.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

1 회원가입

• Question •

아이디/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Answer

상단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비번 찾기하시면 회원가입 시 등록하신 핸드폰 번호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핀(IPIN)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IPIN인증’ 팝업에서 IPIN 신규발급 또는 IPIN 발급기관 찾기 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및 정보보호 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nswer

이용약관 및 정보보호 내용 하단에 있는 ‘위의 이용약관 및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에 동의합니다’ 항목의 체크 박스가 선택되어있어야 합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 시 SMS 문자 수신 동의를 꼭 해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 또는 영업자일 경우 수신 동의를 하셔야 업무 관련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

회원 구분에서 영업자로 가입해야하는데 소비자로 가입했습니다. 영업자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여야합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 시 사업자정보 입력에서 해당되는 사업자분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기타로 넣으면 됩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회원승인이 되지않아 확인해본결과 첨부파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소속회사의 인터넷망에 보안 모듈 또는 방화벽이 되어있을 경우 파일이 첨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콜센터(1688-0026)로 연락 주십시오.

• Question •

회원 구분 선택에서 영업자 사용자로 가입하였을 경우 승인은 누가 해주나요?

.....Answer

해당 회사의 '전체관리자'가 승인 관리합니다.

• Question •

사업장 팝업에서 사업장정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nswer

사업장정보입력을 누르면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

공무원 또는 영업자로 가입하였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승인처리 된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Question •

업태명과 업종명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등록사항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Question •

회원가입 및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인증서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Answer

수입최고기유통이력시스템 로그인 방식은 인증서방식을 사용하므로, 가입승인 후 최초 로그인 시 가입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이후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용자는 GPKI 정부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하며, 영업자 사용자는 일반 개인 인증서 또는 법인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

회사에 업무를 담당하던 사원이 퇴사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관리자가 퇴사사원의 상태를 업무탈퇴처리 하면 수입최고기유통이력시스템 홈페이지는 사용가능 하나 업무를 맡았던 영업자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Question •

전체 관리자 또는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있는 직원이 다른 지점으로 변경 또는 퇴사 시 가지고있던 권한을 다른 직원에게 위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위임받을 직원이 수입유통이력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관리자 또는 전체 관리자가 권한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88-00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인증서 등록 시 등록이 안 된다고 나옵니다.?

.....Answer

주민등록번호 인증 시 엔터를 치지 말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은 9자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3자리 전부 입력 가능합니다.

• Question •

회원 가입 하였으나 로그인이 안됩니다.

.....Answer

회원가입 승인여부 확인 또는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 Question •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받았으나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대소문자 구분과 한/영 전환 여부를 확인하신 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승인이 된 후 로그인이 되오니, 승인여부를 문의 바랍니다.

• Question •

인증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client program 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nswer

client program을 설치 하신 후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조회 시 자사 사업장 주소가 다르게 나옵니다.

.....Answer

등록된 사업장 주소가 잘못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주소 정보를 수정합니다.

• Question •

인증서 등록시 사업자 주소가 누락되었다고 나옵니다

.....Answer

등록된 인허가 정보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 로그인 시 해당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고필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

인증서 로그인 시 인허가 정보 주소가 없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Answer

등록된 인허가 정보에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 로그인 시 해당 메시지가 나옵니다. 신고필증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

사업장의 인허가 번호는 최대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까?

.....Answer

현재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추후에 더 많이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 될 예정입니다.

• Question •

회원 가입 시 임의로 등록된 번호라고 나옵니다(사업자 등록번호, 인허가 번호 등)

.....Answer

단순한 확인 메시지니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 Question •

회원 가입 시 자사의 사업장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사업장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허가 정보를 등록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회원 탈퇴 후 재가입 하고자 하나 이미 등록된 사업자 번호라고 나옵니다.

.....Answer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시스템운영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회원 가입 시 수입/포장/판매를 겸업하는데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해야 합니까?

.....Answer

수입/포장/판매업등 가지고 계신 인허가 사항을 전부 등록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가지고 계신 인허가 사항을 등록 하시고, 영업자 시스템 로그인 시 선택하여 로그인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가능합니까?

.....Answer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보안상의 문제로 제약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쇠고기수입업자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화면에서 조회를 눌러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목록을 나타나게 한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수정 가능한 정보는 '제조년월일 읽는방법', '유통기한표시내용', 부위별 수량 및 중량입니다.

• Question •

수입유통식별번호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 화면에서 조회를 눌러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목록을 나타나게 한 후 폐기할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선택한 후 상단 수입유통식별번호폐기버튼을 누르시면, 폐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폐기사유를 입력한 후 폐기 버튼을 누릅니다.

• Question •

수입신고 된 부위명을 수정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Answer

수입유통식별표 발행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조회 후 출력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부위명 및 유통기한 표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수정하신 뒤 출력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

웹서비스로 데이터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Answer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meatwatch.go.kr>)의 수입이력정보 → 오픈서비스 이용 안내를 읽어보신 후 문의 사항이 있으면 콜센터(1688-0026)으로 연락바랍니다.

• Question •

일괄등록을 위한 엑셀파일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해당 프로그램의 엑셀파일 양식 버튼을 누르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영업자 시스템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

거래내역일괄등록 메뉴에서 신고 시 거래구분을 매입으로 하면 에러가 납니다.

.....Answer

해당 프로그램은 매출 내역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거래구분을 매출로만 등록 해 주세요.

• Question •

수입매출관리에서 매출내역 등록 시 출고창고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기준정보-입출고처관리 프로그램에서 입출고처로 등록된 창고만 출고창고 조회 시 나타나게 됩니다. 매출내역을 등록하시기 전에 입출고처를 등록 해주세요.

• Question •

등록된 매출 거래 내역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Answer

거래내역(매출)-수입매출현황프로그램에서 조회 후 거래내역서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Question •

유통식별번호 재발행을 눌렀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Answer

조회를 다시 하신뒤에 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식별번호 신청 시 태그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출력버튼을 눌렀을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팝업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

유통식별번호 신청 시 검역시행장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검역시행장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역시행장의 등록 서류(검역시행장 지정서&특허보세구역 특허장)를 보내주시면 내역을 수작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Question •

유통식별번호의 재발행이 가능합니까?

.....Answer

유니패스에서 신청하신 경우 화주&원산지&품명을 제외한 항목이 수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트와치 시스템에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

• Question •

가공내역과 생산내역을 등록할 때 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팝업에서 나타나는 목록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Answer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유통식별번호 목록이 나타납니다.

• Question •

가공생산내역을 등록할 때 묶음번호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성하나요?

.....Answer

생산내역을 등록할 때 묶음번호를 이용하여 등록하려면, 사전에 묶음번호관리 프로그램에서 묶음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 Question •

가공생산내역을 등록할 때 등록하고 싶은 제품명이 팝업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nswer

제품명은 팝업을 통해 선택하셔도 되고, 임의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팝업을 통해 나타나는 제품명은 제품관리 프로그램에서 등록한 이름으로 자주 사용하는 제품명을 편리하게 입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Question •

묶음번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묶음번호등록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22자리의 기본적인 묶음번호가 생성되어 화면이 나타납니다. 추가로 임의의 2자리를 입력하고 포함되는 유통식별번호를 추가 한 후 하여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이 됩니다.

• Question •

묶음번호 등록 시 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팝업에서 나타나는 목록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Answer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유통식별번호 목록이 나타납니다.

• Question •

묶음번호 생성시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묶음번호로만 사용하여야 합니까?

.....Answer

직접 생성한 묶음 번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지정된 형식(24자리)으로 생성된 번호여야만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

• Question •

매입관리에서 매입처를 조회 했는데, 거래업체의 정보가 없습니다.

.....Answer

해당업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조회팝업 상단의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체의 정보를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매입처 정보를 직접 등록했는데, 실수로 잘못 등록한 경우 어떻게 매입처 정보를 수정하나요?

.....Answer

직접 등록한 매입처의 정보가 잘못 된 경우 수정하시려면 콜센터(1688-00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

자동매입프로그램의 매입처와 입고처는 무엇입니까?

.....Answer

매입처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속한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거래 업체를 의미합니다.
입고처는 물건이 입고된 본 사업자가 관리하는 창고 또는 매장을 의미합니다.

• Question •

자동매입프로그램의 확정여부는 무엇입니까?

.....Answer

자동매입은 거래처가 등록한 매출내역을 기반으로 쉽게 매입내역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확정은 매출내역을 매입내역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 합니다. 미확정은 아직 매입내역이 등록되지 않은 매출내역을 의미 합니다.

• Question •

거래내역을 등록할 때 수입유통식별번호 조회팝업에서 나타나는 목록이 다릅니다.

.....Answer

매입 시 나타나는 유통식별번호 목록은 해당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거래 업체가 등록한 내역만 나타납니다.
매출반품 시 나타나는 유통식별번호 목록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속한 사업자에게 매입반품 한 거래업체가 등록한 내역만 나타납니다.
매입반품과 매출 시 나타나는 유통식별번호 목록은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유통식별번호 목록이 나타납니다.

• Question •

거래내역일괄등록 시 같은 엑셀파일로 두 번 업로드를 했습니다. 거래내역은 어떻게 등록되나요?

.....Answer

해당 엑셀파일에 거래일자 범위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다시 업로드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복되어 등록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

거래내역 일괄등록으로 등록한 매입 매출 데이터 수정하고 싶습니다.

.....Answer

거래내역 일괄등록으로 등록한 매입 매출 데이터의 거래일자를 확인한 후 수기매입 또는 수기매출 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

입출고처를 등록할 때 입출고 연계번호는 무엇인가요?

.....Answer

엑셀로 거래내역 또는 재고이동, 재고조정 내역을 등록할 때 입출고처를 찾기 위한 항목입니다. 입출고처를 등록하면서 입력한 숫자를 엑셀파일의 입출고창고번호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

부위코드에 없는 코드는 어떻게 입력합니까?수

.....Answer

수입업자가 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할 때 해당되는 부위만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따라서 부위코드에 없는 코드는 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한 수입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항목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

자체적(자사 프로그램 등) 부위코드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Answer

부위코드는 검역원에서 지정한 10대 대부분할 부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코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Question •

엑셀 일괄등록시 몇 개의 부위코드가 잘못 되었다는 창이 나옵니까?

.....Answer

해당 유통식별번호의 부위코드가 수입신고 시 신청한 번호와 상이하여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입업자가 신청한 부위항목으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제 7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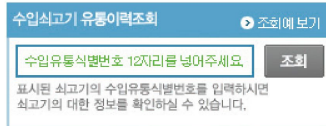
참고 자료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흐름도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사무연락처
3.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도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단체·연락처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흐름도



www.meatwatch.go.kr 접속 후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 입력 확인



8226(발리이력) 번호로 접속 후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 입력 확인



원산지, 품목명, 유통기한 정보 확인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사무연락처

명칭		소재지·연락처	관할지역
서울 지원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능안2길 39-9 Tel : 02-2650-0638 Fax : 02-2650-0695	서울특별시·김포국제공항·경기도(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양주시·부천시에 한한다) 및 강원도
	김포 공항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로 678 국제선청사 173호 Tel : 02-2664-2601 Fax : 02-2664-0659	김포국제공항 및 김포시
	속초사무소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 40 속초항 항만지원센터내 Tel : 033-635-9125 Fax : 033-635-9126	강원도 중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천 지원	인천지원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2층 227호 Tel : 032-740-2640 Fax : 032-740-2659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안산시·군포시
	인천항 사무소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Tel : 032-891-1361 Fax : 032-887-9194	인천국제공항 제외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중 시흥시·안산시·군포시
중부 지원	중부지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29-3 Tel : 031-336-9562 Fax : 031-336-9560	대전광역시·경기도(서울지원 및 인천지원 관할구역 이외 시·군한함) 충청남도·충청북도
	평택사무소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1 평택항 마린센터 4층 Tel : 031-8053-7705 Fax : 031-8053-7707	경기도 중 수원시·평택시·오산시·화성시
	천안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5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2층 Tel : 041-522-4570 Fax : 041-522-1825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청주사무소	충북 청원군 내수읍 입상리 산 5-1번지 한국공항공사 2층 Tel : 043-263-4218 Fax : 043-263-4217	충청북도

명칭		소재지·연락처	관할지역
영남 지원	영남지원	부산 서구 암남 공원로 270 Tel : 051-603-0671 Fax : 051-603-0679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 상북도·경상남도
	신선대 사무소	부산 남구 용당동 123번지 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 터미널 본관1층 Tel : 051-611-6966 Fax : 051-611-7524	부산광역시 중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김해공항 사무소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김해국제공항내 Tel : 051-971-4991 Fax : 051-973-8366	김해국제공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김해시·양산시
	대구사무소	대구 동구 신천3동 86-1 한우빌딩 3층 Tel : 053-768-4018 Fax : 053-763-503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마산사무소	경남 마산시 315 의거길 741 Tel : 055-223-9590 Fax : 055-245-8337	경상남도 중 진해시·창원시·거제시·마 산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창녕군·의 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 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호남 지원	호남지원	전북 군산시 해망로 643 Tel : 063-445-7348 Fax : 063-443-1013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광주사무소	광주 북구 오룡동 1110-13 (첨단과기로 200번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Tel : 062-975-6030 Fax : 062-975-6058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중 목포시·나 주시·담양군·영광군·영암군·장성군·함 평군·화순군·무안군·강진군·해남군·진 도군·완도군·신안군
	광양사무소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2번지(항만1로 221번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양항 동측 배후물류단지 운영센터 1층) Tel : 061-762-6294 Fax : 061-762-6295	전라남도 중 광양시·여수시·순천시·곡 성군·구례군·보성군·장흥군·고흥군
제주 지원	제주 지원	제주 제주시 청사로 2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Tel : 064-728-5300 Fax : 064-728-5324	제주특별자치도

3 수입최고기 유통이력제 시·도

구분		사무실	
		TEL	FAX
서울	식품안전과 축산물안전팀	02-6361-3880	02-6361-3864
		02-6361-3877	
		02-6361-3868	
		02-6361-3869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시험팀	02-570-3151	02-570-3349
		02-570-3200	02-570-3206
		02-570-3430	02-570-3043
		02-570-3433	
부산	해양농수산물국 농축산유통과	051-888-3210	051-888-3209
		051-888-3233	
		051-888-3234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사업과	031-756-0703	051-757-2879 051-338-8266
		051-331-5011	
		051-331-5012	
		051-331-5012	
		051-331-5012	
대구	농식품과 축산물위생계	053-803-3430	053-803-3439
		053-803-3460	
		053-803-3462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축산물분석과	053-760-1202	053-760-1333
		053-760-1205	053-760-1302
		053-760-1310	053-760-1302
		053-760-1312	053-760-1302
인천	농식품유통과	032-440-5024	032-440-8663
		032-440-4391	
		032-440-4392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	032-440-5401	032-440-5490
		032-440-5406	032-440-5582
		032-440-5571	
		032-440-5572	

구분		사무실	
		TEL	FAX
광주	경제산업국 농산유통과	062-613-3950	062-613-3969
		062-613-3980	
		062-613-3983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시험검사실	062-380-1800	062-571-0496
062-571-0497			
062-571-0497			
062-571-0497			
대전	농업유통과	042-600-2270	042-482-5430
		042-600-5441	
		042-600-2273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검사과	042-870-3330	042-870-3489
		042-870-3480	
		042-870-3482	
		042-870-3485	
	울산	농축산과 축산팀	052-229-2910
052-229-2930			
052-229-2935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052-229-5200	052-229-5209
		052-229-5203	052-229-5249
		052-229-5250	
		052-229-5253	
경기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	031-249-2650
	031-249-4517		031-249-2658
	031-249-2654		
	031-249-4516		
	031-249-4518		
	(제2청사) 축수산산림과 축산방역계 ※한수이북관할	031-850-2450	031-850-2479
		031-850-2481	
		031-850-2482	
		031-850-2483	

구분		사무실	
		TEL	FAX
경기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팀 축산물위생담당 가공분석팀 축산물위생검사담당	031-8008-6361	031-8008-6247
		031-8008-6250	031-294-6763
		031-8008-6291	
		031-8008-6320	031-8008-6247
		031-8008-6323	
	동부지소	031-8008-6360	031-636-3676
		031-8008-6365	031-636-3676
	남부지소	031-299-5430	031-651-1614
		031-651-2037	031-651-1606
	제2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팀 축산물위생담당	031-8008-6400	033-820-0203
		031-8008-6450	033-820-0205
		031-8008-6451	
	북부지소	031-8008-6475	031-593-4012
		031-8008-6473	031-593-4012
강원	축산과	033-249-2650	033-249-4042
	유통위생계	033-249-2658	
	위생감시	033-249-2656	
	인허가	033-249-2652	
	가축위생시험소	033-248-6619	033-248-6617
	검사방역과	033-248-6620	
	검사계	033-248-6640	
	시험분석계	033-248-6635	
	동부지소	033-610-8700	033-610-8722
		033-610-8710	
	남부지소	033-248-6770	033-761-1890
		033-248-6772	
	중부지소	033-339-8850	033-333-5302
		033-339-8855	
북부지소	033-636-8531	033-636-8582	
	033-636-8581		
충북	축산과	043-220-3910	043-220-3919
		043-220-3931	
		043-220-3932	
		043-220-3933	

구분		사무실	
		TEL	FAX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043-220-5600	043-220-5569
		043-220-5550	
		043-220-5611	
		043-220-5585	
	북부지소	043-220-5620	043-220-5629
		043-220-5621	
	남부지소	043-220-5630	043-220-5639
		043-220-5631	
제천지소	043-220-5640	043-644-9110	
	043-220-5641		
충남	축산과 축산물위생계	042-251-2720	042-251-2729
		042-251-2873	
		042-251-2722	
	가축위생연구소	041-631-3091	041-631-3093
	축산물검사와 검사담당	041-631-3094	041-631-3093
	아산지소	041-548-2950	041-548-2954
	부여지소	041-833-8610	041-830-2724
	태안지소	041-675-4349	041-675-4348
	당진지소	041-352-4056	041-357-5850
전북	축산경영과 축산물안전계	063-280-2650	063-280-2729
		063-280-2686	
		063-280-4640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와 분석팀	063-220-6577	063-220-6511
		063-220-6540	
		063-220-6541	
익산지소	063-290-6511	063-290-6538	
	063-290-6512		
전북	정읍지소	063-290-6540	063-290-6568
		063-290-6540	
	남원지소	063-290-6570	063-290-6598
		063-290-6571	

구분		사무실	
		TEL	FAX
전북	장수지소	063-352-9878	063-352-9877
		063-352-9876	
전남	축정과	061-286-6510	061-286-4787
		061-286-6540	
		061-286-6541	
	축산기술연구소 검사과	062-941-2577	062-941-2576
		062-941-3668	062-941-4660
		062-941-3668	
	동부지소	061-755-6396	061-751-1045
		061-752-7749	
	남부지소	061-432-8938	061-434-8171
		061-433-7900	
경북	축산경영과 축산물위생계	053-950-2650	053-950-2659
		053-950-2888	
		053-950-3798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분석	053-326-0011	053-326-0014
		053-326-0012	053-326-0030
		053-326-9412	
	북부지소	054-850-3205	054-850-3289
		054-850-3294	
	동부지소	054-748-6624	054-748-6683
		054-748-6684	
서부지소	054-530-4100	054-534-1755	
	054-530-4131		
경남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	055-211-3650	055-211-3659
		055-211-3682	
		055-211-3683	
	축산진흥연구소 가축위생과	055-771-6600	055-771-6619
		055-771-6610	
		055-771-6642	
	중부지소	055-211-5775	055-211-5779
		055-211-5776	
		055-211-5773	

구분		사무실	
		TEL	FAX
경남	북부지소	055-930-9864	055-930-3865
		055-930-9861	
		055-930-3862	
	남부지소	055-650-6730	055-650-6740
		055-650-6742	
제주	측정과 위생유통담당	064-710-2120	064-710-2129
		064-710-2141	
		064-710-2142	
		064-710-2143	
	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20	064-710-8529
	방역위생과	064-710-8530	
	축산물분석	064-710-8561	

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단체·연락처

구분	전화	팩스
한국수입육협회	02-2281-4995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한국체인스토어협회	02-522-1271	02-522-1275
한국식육부산물업중앙회	02-407-9062	
가축위생방역본부	070-8282-2657	031-436-8776
한국육가공협회	031-223-0813	
축산물품질평가원	031-390-5500	

국내산쇠고기 이력제 업무편람
(국내산쇠고기)

국내산쇠고기 이력제 업무편람

제 1 장

국내산쇠고기 이력제 추진현황

1. 추진 경과
2. 추진체계
3. 기관별 역할

1 추진 경과

- '04.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꾸준히 개선, 보완
 - '04 :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실시
 - 홈페이지 구축, 도축장 등 연계사업장 30개소(대상 사육두수 : 40천두)
 - '05 : 14개 브랜드경영체 참여 및 DNA 동일성검사 실시
 - DNA 동일성검사 전문 인력 채용 및 실험실 확보
 - 도축장 13, 가공장 13, 판매장 30개소 연계(대상 사육두수 : 59천두)
 - '06 : 20개 브랜드경영체와 3개 시·군 참여
 - 도축장 21, 가공장 24, 판매장 93개소(대상 사육두수 : 214천두)
 - '07 : 경기도, 25개 시·군, 22개 브랜드경영체 등에서 참여
 - 도축장 39, 가공장 32, 판매장 178개소(대상 사육두수 : 730천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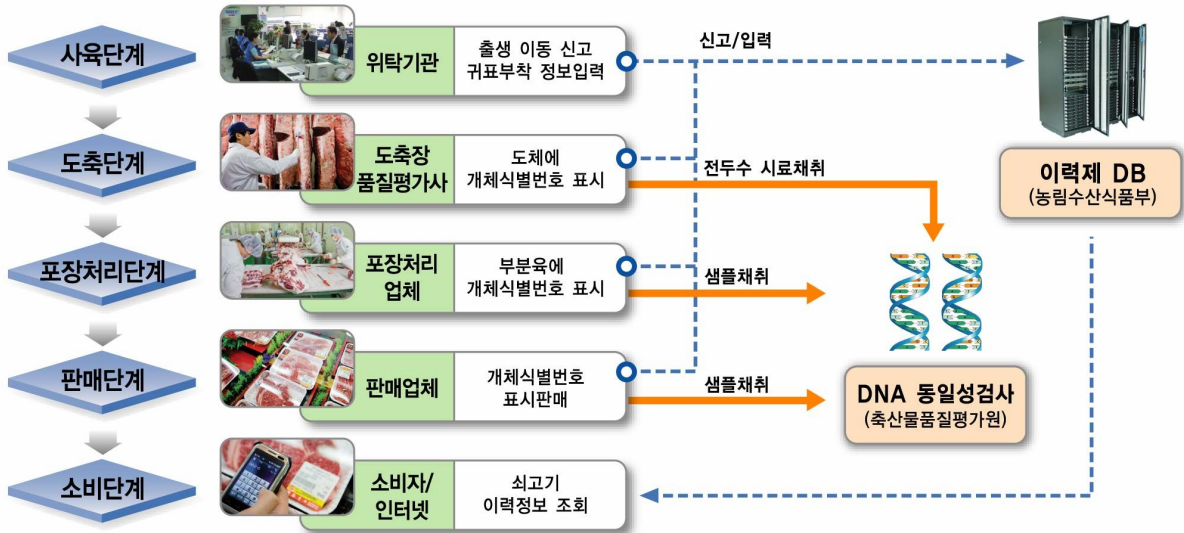
- '07.12.2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 '08.12월22 :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의무화

- '09.6월 : 유통단계를 포함하여 쇠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 '10.5월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수입쇠고기 포함)

2 추진체계



가.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 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
 - 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귀표부착

나.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다. 포장처리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라.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마.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3 기관별 역할

가. 기관별 추진체계



나. 기관별 역할과 기능

기관	역할 및 기능
농림수산물부	○ 사업운영총괄 및 지도 감독
시·도지사	○ 사육·도축·가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원	○ 판매 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수의과학검역원	○ 수입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 ○ 질병 등 역학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쇠고기 이력시스템 DB 운영 ○ 소 개체식별대장의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분석
위탁기관	○ 소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관리 ○ 귀표의 부착 지원

제 2 장

단계별 업무 매뉴얼

1. 사육단계
2. 도축단계
3. 포장처리단계
4. 판매단계
5. 위반시 조치

1 사육단계

가. 소의 출생신고

□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 신고 및 귀표부착 방법

-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면 해당지역의 위탁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위탁기관은 고령 등의 농가가 요청한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함.
 - 단, 초유떼기 등 육우의 경우, 7일 이내에 귀표부착

□ 신고기한

- 출생 후 5일 이내

□ 신고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자는 <표 1호> 서식의 「출생등 신고서」 <음영부분>를 작성,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가능

□ 신고서의 기록·관리

- 위탁기관에서 서면 외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 <표 1호> 서식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록·보관
- 위탁기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 가능

유의사항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⑮란을 기재합니다. ⑧~⑩의 경우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신고한 경우 해당 소의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⑫란의 소의 종류 및 ⑬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하며, ⑭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⑮ 모개체식별번호는 “자가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고, “대리모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합니다.
2. 양도 및 양수신고는 ①~⑤란과 ⑯~⑳란을 적습니다. 또한, ⑯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㉑란을 적고, ㉒란의 폐사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나. 소의 양도·양수(도축출하 포함), 수입·수출, 폐사신고

1.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가 양도·양수 또는 수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를 생우로 수입한 경우
- 소가 폐사된 경우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

2. 신고방법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표 2호>의 ‘소의 출생등 신고서’에 의거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
 -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양도·양수, 수입·수출 불가
- 도축을 위해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도축의뢰자는 최종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

3. 신고기한 : 이동 등 사유발생 후 5일 이내

4. 신고내용

-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의 경우 「출생 등 신고서」 음영처리부분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탁기관에 신고
 - 여러 마리를 신고할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가능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최종사육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농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다. 변경신고(기록·누락 오류수정 포함)

1. 신고대상

- 출생 등 신고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등을 변경신고하려고 하는 소유자 등

2. 신고방법

- 소의 소유자 등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는 <표 3호>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물부 이력지원실로 신고
- 소의 소유자 등이 기록의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고 할 경우는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3. 신고내용

- 변경신고
 -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중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중 공통신고사항(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가능)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기록·누락, 오류 수정 신고
 - 기록·누락, 오류수정의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
 - 소의 소유자 등이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과 맞지 아니하게 신고한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 직권으로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 수정

라. 귀표부착의 예외시 조치

1. 귀표부착 예외 대상

-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귀표부착의 예외로 규정한 경우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2. 처리 방법

- 소 사육농가 중 귀표부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귀표 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당해 위탁기관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관리하여야 한다.
- 소 소유자는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 귀표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육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추진내용
①출생(수입 수출)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귀표 부착 ○ 귀표부착 후 이력시스템에 정보 입력
②양도·양수, 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양도·양수,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 ○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최종소유자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
③ 기존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소(2008.12.22이전에 가지고 있는 소)의 경우도 위탁기관에 출생등신고서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표부착우 : 이력정보등록 - 미귀표부착우: 귀표부착후 이력정보등록
④ 변경신고 (누락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신고된 사항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2 도축단계

가. 도축신고(도축출하신고 포함)

- 소유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 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소유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의뢰시 농가명(최종 소유자 등), 주민등록번호,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업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하여야 함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입력
- 도축업자는 해당 도체가 전산신고 가공장 등으로 반출될 경우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반출자의 인적사항, 상호, 주소 등을 신고
- 신고기한
 -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

○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p>1.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2. 개체식별번호 관리</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하여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방법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
- 검사관은 <표5호>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신고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이력지원실은 개체식별번호 부여
- 검사관은 부여받은 번호를 해당도체에 부여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다.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개체식별대장에 날짜별로 적고 관리 하여야 함
 - 도축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처리 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거 이력제 전산망으로 입력 된 경우 개체식별 대장에 등록 한 것으로 같음
-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라. DNA 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후 해당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시료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품질평가원 본원 유전자분석실로 이송

<표6호>

도축단계 업무흐름

업무흐름		조치사항
①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②개체식별 번호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이력정보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③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④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해당 도체에 부착
⑤DNA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⑥등급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전송

3 포장처리단계

❖ 쇠고기 포장지 등에 개체식별번호 표시(법 제11조)

- 포장처리 하는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개체식별번호는 12자리로 표시(바코드와 병행표기 권장)

❖ 포장처리한 경우 그 실적을 신고하고 관련사항을 기록·보관(법 제4조 , 제25조)

- 지정업체 : 포장처리실적(전산신고), 판매·반출실적(장부기록)
- 일반업체 : 포장처리실적(장부기록), 판매·반출실적(장부기록)
※ 지정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해당

- 식육포장처리업장에 입고 된 지육/부분육은 꼭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 여부를 확인**

※ 이력정보확인 : 인터넷(www.mtrace.go.kr),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 개체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발골·정형 후 포장 처리
- 발골·정형한 쇠고기를 부위별로 포장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포장처리실적 신고 : 날짜별 구분하여 [붙임1]에 따라 기록·관리
-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가능
 - **묶음번호 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붙임3]를 기록·보관하고, 해당 쇠고기 판매시 개체식별번호 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구매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 영업자 준수사항

구 분		주 요 업 무
전산 신고	지정 식육포장처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 [붙임1]의 쇠고기포장처리실적을 이력제 전산망을 통해 전산 신고
	일반 식육포장처리업자	○ 자체장부 기록·관리(전산신고는 자율적관리가능) ※ 전산관리를 희망하는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 신청
장부관리		○ 쇠고기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기록·보관(2년) ○ 구매자 요구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 교부
개체식별번호표시		○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예



□ 지정 식육포장처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2011년 12월22일부터는 평균 종업원이 5인이상으로 변경 적용)

[붙임1]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포장 처리일	②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원료 또는 부위명	④무게 (kg, t)	⑤매입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붙임2]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판매· 반출일	②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원료 또는 부위명	④판매량 (kg, t)	⑤판매·반출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붙임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묶음번호	③ 부위명	④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⑤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4 판매단계

❖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법 제11조)

- 대면해서 판매할 경우 식육의 판매표시판에 표시
 - 개체식별번호는 12자리로 표시
- 소포장용기에 판매할 경우 해당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소머리, 내장, 우족, 꼬리, 뼈 등은 표시 제외

❖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1년)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 개체식별번호기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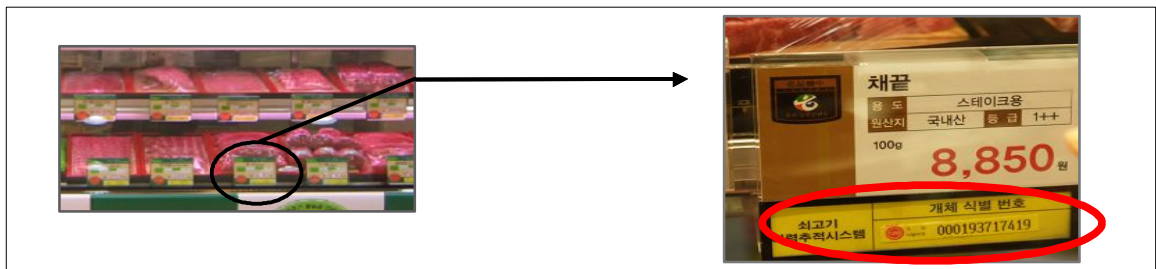
- 판매장에 입고 된 지육/부분육은 꼭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 여부를 확인 인터넷(www.mtrace.go.kr), 휴대폰(6626+인터넷버튼)**
- 개체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함
- 거래내역서를 기록할 때는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재
-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가능
 - **묶음번호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붙임3] 기록·보관하고, 해당쇠고기 판매시 개체식별번호 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 교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 영업자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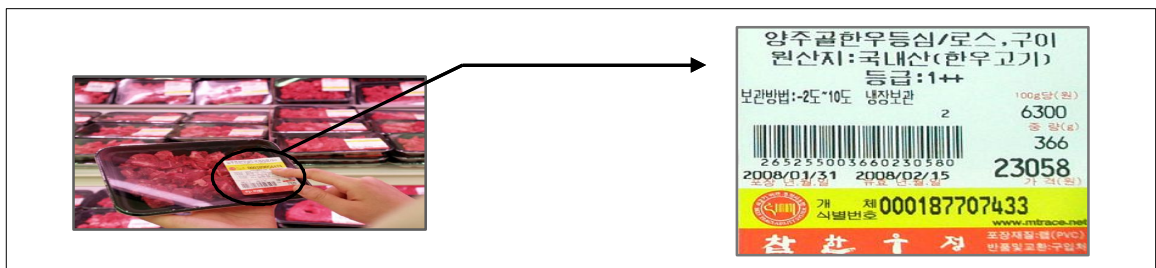
구분	주요업무
거래내역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 후 1년간 보관 (전산신고는 자율적으로 가능) ○ 구매자 요구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 교부
개체식별번호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판매시 식육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개체식별번호표시방법은 전자저울, 수기기재, 라벨러 기기 등을 활용하여 표시가능

□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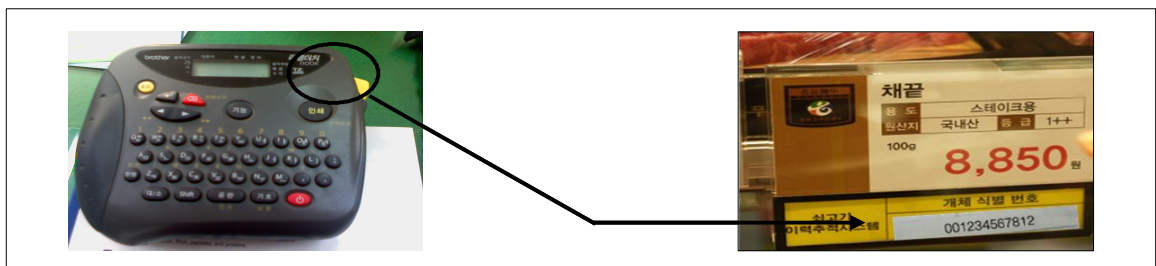
① 식육판매표시판을 이용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진열·판매시)



② 라벨을 이용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소포장하여 판매시)



③ 라벨러 이용한 식육판매표시판에 개체식별번호 부착(식육판매표시판)



□ 묶음번호 관리요령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표6호>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가능
- 등급표시 의무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동일한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
-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

5 위반시 조치

가. 시정명령(법 제21조)

-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세부 시정명령 내용은 시·도 및 농관원 자체 지침으로 규정
 - 확인서에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 서명(거짓표시→ 표시변경, 미표시 → 표시이행)

나. 과태료 부과·징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횟수는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함

<식육포장처리업소>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포장처리실적 미신고(법 제4조 제2항)	10	20	40	160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거짓표시(법 제11조 제1항, 제2항)	30	60	120	240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 미교부(법 제11조제3항)	30	60	120	240
시정명령 위반(제21조)	30	60	120	240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법 제34조)	20	40	80	320
검사 또는 시료수거 거부방해 기피(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식육판매업소>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거짓표시(법 제11조 제1항, 제2항)	30	60	120	240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영수증 등 미교부(법 제11조제3항)	30	60	120	240
시정명령 위반(제21조)	30	60	120	240
장부 미기록·거짓기록 및 보관의무 위반(법 제34조)	20	40	80	320
검사 또는 시료수거 거부방해 기피(법 제14조 제1항~3항)	50	100	200	400

제 3 장

DNA동일성 검사

1. 검사 추진체계
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1 검사 추진체계

□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정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 시행기관 : 시·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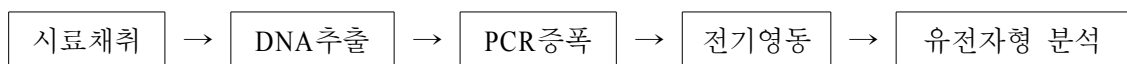
□ 이력단계별 ‘지도단속’과 이행실태 ‘모니터링’ 병행 실시

- 지도단속 : 시·도(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식육판매업소)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이력단계별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기관)
 - 사육단계 : 시·도(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표본검사)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도축 전두수 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 판매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

□ DNA동일성검사의 분석 및 판정절차

○ 분석과정

- 일반적인 DNA동일성검사의 분석과정은 5단계로 실시










[그림 1] DNA동일성검사 분석과정

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DNA 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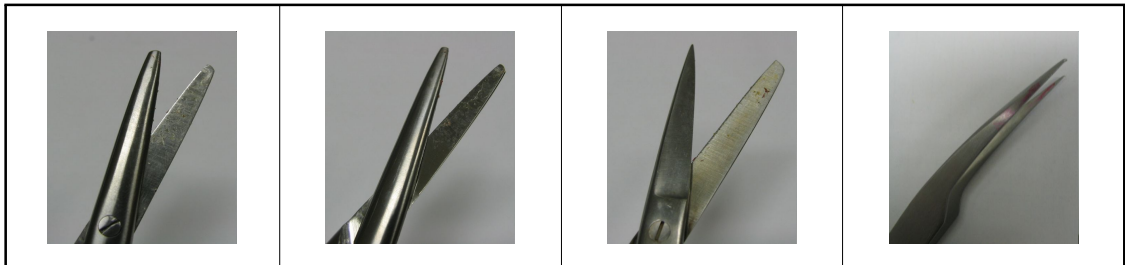
	업무흐름	추진요령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cm×10cm)에 밀봉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담당자간 서명날인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검사용 지정봉투의 추가봉인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cm×30cm)에 넣음
검사실 우송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가공장·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실)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시료채취 및 우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 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액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다른 개체가 같다고 판명이 날 수도 있음
 - 사용시 물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동일성검사 의뢰서 및 시료봉투작성은 볼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단계별 업무 흐름도 요약

단 계	업 무
사육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수입, 수출) 신고 <li style="padding-left: 20px;"><등록내용> <li style="padding-left: 40px;">- 송아지 출생시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 부착 <li style="padding-left: 40px;">- 귀표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 양도·양수, 폐사 <li style="padding-left: 20px;">- 소의 양도·양수, 폐사시 위탁기관에 신고 <li style="padding-left: 20px;">-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 통보 ○ 변경 신고 <li style="padding-left: 20px;">- 기 신고된 사항 중 개체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도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신청 접수 <li style="padding-left: 20px;">-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 개체식별 번호 확인 <li style="padding-left: 20px;">-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li style="padding-left: 20px;">-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위생검사 및 도축 <li style="padding-left: 20px;">-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도축 <li style="padding-left: 20px;">-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 라벨출력 및 부착 <li style="padding-left: 20px;">-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li style="padding-left: 20px;">-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에 등에 부착 ○ DNA 시료 채취 <li style="padding-left: 20px;">- 축산물품질평가사 도체에서 시료채취 후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우송 ○ 등급판정결과 입력 <li style="padding-left: 20px;">-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및 자료 전송
포장처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장 입고 <li style="padding-left: 20px;">-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 확인

단 계	업 무
포장처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골·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장에 입고된 도체의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 발골·정형 ○ 부위별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 ○ 박스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겹포장지에 부착하고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 표시 ○ 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명세서와 개체식별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판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장 입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 등 기록 관리 ○ 부분육의 소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체식별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 개체식별번호게시 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후 판매 ○ 이력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터치스크린, 인터넷 등을 통해 쇠고기 이력 정보 공개
DNA 동일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용 시료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에서 보관용 DNA 시료채취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송 ○ 시료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된 DNA 시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 검사용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장, 판매장에서 검사용 DNA 채취 ○ DNA 동일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 추출, PCR 증폭, 전기 영동, DNA 판독 ○ DNA 동일성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에 채취된 시료와 가공장·판매장에서 수거한 시료의 DNA 동일성 여부 확인

관련 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서식

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3단 비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right;">[시행 2010.12.22] [법률 제10311호, 2010. 5.25, 전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수입 및 쇠고기의 생산(수입 쇠고기인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3. “수입유통식별번호”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4. “소의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축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 	<p style="text-align: right;">[시행 2010.12.22] [대통령령 제22533호, 2010.12.20, 전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시행 2010.12.22] [농림수산물부령 제159호, 2010.12.22, 전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식육포장처리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 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7. “식육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8. “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9. “쇠고기 수입업자”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p> <p>10. “귀표”란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수입 유통식별번호 및 수입 쇠고기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 쇠고기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p> <p>12.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이하 “개체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13. “수입유통식별쇠고기”란 수입 유통식별번호를 부착한 수입 쇠고기</p>		<p>제2조(부산물의 범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p> <p>14.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회수대상 쇠고기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를 말한다.</p> <p>15. “수입”이란 외국 소나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2장 소 및 개체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p> <p>제4조(출생 등의 신고) ①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p>	<p>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p>	<p>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위해쇠고기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쇠고기를 말한다.</p> <p>제4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소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폐사, 수입·수출 또는 양도·양수한 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p> <p>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p> <p>제5조(출생 등 신고의 기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의 경우 기한 전에 해당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하여야 한다.</p> <p>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p> <p>2.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p> <p>3. 양도·양수 신고: 양도·양수한 날부터 5일 이내</p> <p>제6조(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지정) ①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 허가증 사본</p> <p>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p> <p>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주어야 한다.</p> <p>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한 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 ①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p> <p>제8조(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기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업자: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처리능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축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자: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5조(귀표의 부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귀표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전에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신고된 소: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 2. 수입 신고된 소: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p>② 출생 신고된 소의 소유자등은 고령(高齡) 등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9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0조(목줄을 이용한 귀표의 부착)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는 경우 2. 소의 귀 질환이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1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6조(귀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5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 	<p>제3조(귀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p>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p> <p>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들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부령은 제4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물부령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개체식별대장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p>	<p>제4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 기간)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제12조(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 부모(父母) 소의 개체식별번호 3. 양도·양수 및 폐사 내역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고 확인한 해당 소의 도축검사 결과 합격 여부 5.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등급판정 결과 6.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7.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8.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p> <p>③ 농림수산물부령은 소의 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신고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개체식별대장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9조(개체식별대장 기록 누락 시의 조치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소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0조(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p>		<p>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소의 소유자등은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14조(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p> <p>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쇠고기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5조(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5에 따른다.</p> <p>제16조(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p> <p>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른다.</p> <p>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7에 따른다.</p> <p>제17조(개체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법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4.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p> <p>제12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 쇠고기의 효율적인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쇠고기 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 쇠고기를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쇠고기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p>		<p>5.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p> <p>제18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이전까지로 한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8에 따른다.</p> <p>제19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13조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수입신고)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7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p>제20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거래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 수입업자: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p> <p>제21조(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지정) ① 영 제6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p> <p>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유통기한의 만료일) 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4. 거래품명 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 6. 쇠고기 수입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7.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역 8. 위해쇠고기 해당 여부 9.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통지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p>제22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법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하증권번호 2. 수입신고필증번호 3. 검사장소 및 입고일 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수입유통식품별쇠고기의 수입신고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변경신고) 쇠고기 수입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 확보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쇠고기 수입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으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무계를 포함한다)</p> <p>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p> <p>6.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 여부</p> <p>7.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p> <p>제23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 등)</p> <p>①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③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감 독</p>		<p>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원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p> <p>제24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1에 따른다.</p> <p>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2에 따른다.</p> <p>제25조(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등 교부 대상자)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포장처리업자 2. 식육판매업자 3. 식육부산물판매업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5.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6.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시정명령)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20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p>		<p>제26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 칙</p> <p>제23조(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p> <p>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해당 소</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④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증명서의 교부)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p>	<p>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조(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p> <p>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유통기한 9.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쇠고기가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관정을 한 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접수한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5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쇠고기 수입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③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은 별표 13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관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발급 신청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5.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6.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관리 7.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신고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9.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1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구축인증 신청 및 구축인증의 갱신 여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7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고자 하</p>	<p>제10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부 확인 11.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제29조(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된 정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정보 3. 그 밖에 검역원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영업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장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 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영업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부여·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정보처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는 정보</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부여·갱신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의 임원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4.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에 따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p> <p>5. 축산 관련 단체의 임원</p> <p>6. 소비자단체의 임원</p> <p>7.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p> <p>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p> <p>9.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의 임직원</p> <p>10. 축산물의 유통 또는 도축 관련 전문가</p> <p>11. 수입 축산물 관련 단체의 임원</p> <p>12. 정보처리 관련 전문가</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3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3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3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p>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4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농림수산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35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p>3.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4.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대장의 기록</p> <p>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p> <p>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및 기록사항 보존</p> <p>6.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수정 요구의 접수 및 수정</p> <p>7.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8.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소 수입자, 소 수출자 및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9.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p> <p>10.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다만, 제6항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p> <p>11.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p> <p>12. 법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3.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 소 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14.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정</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의 소유자등 및 도축</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p>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4.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5.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의 소유자등 및 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p> <p>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 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수정 요구의 접수 및 수정</p> <p>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p> <p>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p> <p>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p> <p>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의 접수</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생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p> <p>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p> <p>⑥ 국립수산물품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p> <p>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⑧ 국립수산물품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비용 지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귀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별 칙</p> <p>제32조(벌칙) 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7.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6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9.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비용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통식별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p> <p>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8.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p> <p>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p> <p>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p>	<p>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p> <p>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p> <p>8.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p> <p>9.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자</p> <p>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p> <p>1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1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1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15.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16.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칙 <제10311호, 2010. 5.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의 소유자등이 수입을 신고한 소부터 적용한다.</p> <p>②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 쇠고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기존 소는 이 법에 따라 출생 등의 신고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에 관한 특례) 2011년 12월 21일까지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로 본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의 출생·폐사 또는 양도·양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한 개체식별쇠고기는 이 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를 마친 것으로 본다.</p> <p>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나.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0	40	80	320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 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0	20	40	160
아.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	20	40	16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자.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20	40	80	32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30	60	120	240
파.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30	60	120	240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30	60	120	240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0	40	80	320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부산물물의 범위(제2조 관련)

	품명	영문명	비고
1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Other Beef	
2	쇠고기 기타	Other Beef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소 식도	Beef Esophagus	
4	소 간	Beef Liver	
5	소 갑상선	Beef Thyroid Gland	
6	소 건	Beef Tendon	
7	소 골수	Beef Bone Marrow	
8	소 꼬리	Beef Tail	
9	소 뇌	Beef Brain	
10	소 뇌하수체	Beef Pituitary Body	
11	소 대망막	Beef Omentum	
12	소 머리고기	Beef Head meat	
13	소 목	Beef Neck	
14	소 방광	Beef Bladder	
15	소 비장	Beef Spleen	
16	소 생식기	Beef Reproductive Organ	
17	소 식용 가죽	Beef Edible Skin	
18	소 신장	Beef Kidney	
19	소 심장	Beef Heart	
20	소 위	Beef Tripe	
21	소 유방	Beef Breast	
22	소 입술	Beef Lips	
23	소 자궁	Beef Uterus	
24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Salted/Brined Beef Gut(Casing)	
25	소 장간막	Beef Mesentery	
26	소 족	Beef Feet	
27	소 지방	Beef fat	
28	소 창자	Beef Gut	
29	소 척수	Beef Spinal Cord	
30	소 췌장	Beef Pancreas	
31	소 편도	Beef Tonsil	
32	소 허파	Beef Lung	
33	소 혀	Beef Tongue	
34	소 횡격막	Beef Diaphragm	
35	소 흉선	Beef Thymus	
3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부위		

소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4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구역의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고서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공통 신고사항		1. 소유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3. 소유자등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사육시설의 소재지 6. 사육시설에서 사육을 시작한 날짜
신고의 종류	출생 신고	1. 출생 연월일 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3.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기타) 4. 부 개체식별번호 5. 모 개체식별번호 6. 기존 소 신고 가. 개체식별번호 나. 출생 연월일 다. 암수 구분 라. 소의 종류 마. 부·모 개체식별번호
	수입·수출 신고	1. 수입·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기타) 4. 소의 종류 5. 원산지
	양도·양수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양도·양수신고 구분 3. 양도자·양수자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대표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5. 양도 또는 양수 연월일 6.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폐사 신고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 원인(가. 법정전염병 살처분 나. 일반질병 다. 사고 라. 기타)

3. 신고서의 기록·관리

소유자등이 서면 외의 방법으로 출생 등을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한 위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 등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4.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의 도축처리 결과 등 신고(제7조제3항 관련)

1. 신고의 종류 및 내용

신고의 종류	신고 내용
1. 도축처리 결과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다. 업소명 마. 주소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라. 사업자등록번호 2. 도축 의뢰인 가. 성명 다. 업소명 마. 주소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라. 사업자등록번호 3. 도축 목적 4. 출하 농가 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유자등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소 5. 접수번호 6. 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 수입소) 7. 성별 8. 연령 9. 생체량(도체 무게) 10. 총수량 11. 개체식별번호 12. 수입소의 경우 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 13. 신청 연월일 14. 검사 결과
2.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	1. 포장 처리일 2. 개체식별번호 3. 원료 또는 부위명 4. 무게 5. 매입처(상호, 사업자등록번호)
3. 그 밖에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1조 관련)

1.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식별코드, 바코드 및 농업이미지 엠블럼 등이 표시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p> <p>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2. 귀표의 규격	<p>가. 규격</p> <p>1) 귀표의 크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일반형: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 style="margin-left: 20px;">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mm~35mm</p> <p>2) 글자 색상: 검은색</p> <p>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p> <p>나. 재부착용 귀표</p> <p>1) 크기: (가로) 55mm~70mm, (세로) 65mm~85mm</p> <p>2) 농업 CI, KOR, 관리번호 인쇄</p> <p>다. 귀표 모양</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r> <th colspan="3">귀표 모양</th> </tr> <tr> <th style="width: 33%;">일반형 귀표</th> <th style="width: 33%;">단추형 귀표</th> <th style="width: 33%;">재부착용 귀표</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귀표 모양										
일반형 귀표	단추형 귀표	재부착용 귀표								
										
3. 귀표의 부착방법	<p>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p>									
4. 귀표의 관리 등	<p>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나.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p>									
<p>5.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도축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관련)

<p>1.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p>	<p>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 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중에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소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검사관에게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개체식별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지육에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어야 한다.</p> <p>라.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2.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등</p>	<p>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육에 개체식별번호와 대응된 도축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후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파쇄 해야 하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p> <p>라. 그 밖에 도축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6]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등(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1.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방법	<p>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도축장에서 입고된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p>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 등에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나.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p> <p>다.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라.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한다.</p>
2. 개체식별 번호의 관리	<p>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된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개체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제16조제2항 관련)

<p>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p>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p>다. 여러 개의 다른 개체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p> <p>마.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p> <p>바. 묶음번호는 로트(lot) 번호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2. 묶음번호의 관리</p>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p> <p>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 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p>
<p>3.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8]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제18조제2항 관련)

1.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쇠고기 수입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인	1.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3. 사업자등록번호 5. 전화번호 7. 팩스번호	2. 주민등록번호 4. 소재지 6. 영업신고(허가)번호 8. 업종
검사(반입)장소	1. 검사(반입) 장소명	
수입품목	1. 한글명 3. 포장수량	2. 영문명 4. 순무게
부위	1. 부위명 2. 부위별 수량 3. 부위별 무게	
수입내역	1. 화물관리번호 2. 선하증권번호(B/L No) 3. 생산국	

3. 신청서의 기록·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9조 관련)

<p>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방법</p>	<p>가.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수입업자코드 4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체크코드 1자리 등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p> <p>나. 검역원장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p>	<p>수입유통식별표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p>
<p>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p>	<p>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p> <p>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검역원장의 승인 후에 수정할 수 있다.</p> <p>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한글표시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p>
<p>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p>	<p>검역원장은 쇠고기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p>
<p>5.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별표 10]

거래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제20조제2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거래내역 신고서로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 내용

항목	내용
신고인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출고(입고)처	1. 영업장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양도·양수)	1. 성명(법인명) 2. 대표자 3.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거래내역(양도·양수)	1. 거래일 2. 수입유통식별번호 3. 제품명(부위명) 4. 수량 5. 무게

3.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호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4. 그 밖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1.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p>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려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p> <p>다.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라.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는 물리적 또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p>	<p>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대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와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p>
2. 수입유통식별번호의 관리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용기·포장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훼손되거나 지워진 경우 원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으나, 식별하기 쉽게 해야 한다.</p> <p>나.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p>가.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p> <p>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p>
<p>3.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묶음번호 표시방법 등(제24조제2항 관련)

1.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p>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p> <p>나.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p> <p>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p>																												
2. 묶음번호의 관리	<p>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p> <p>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 쇠고기를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p> <p>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p>																												
3.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10%;">기관코드</th> <th style="width: 10%;">구분코드</th> <th style="width: 15%;">영업자코드</th> <th style="width: 10%;">영업장코드</th> <th style="width: 10%;">묶음날짜</th> <th style="width: 10%;">일련번호</th> </tr> </thead> <tbody> <tr> <td>길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타입</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숫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숫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숫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숫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숫자</td> </tr> <tr> <td>코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41</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동</td> </tr> </tbody> </table> <p>가. 구분코드는 고정값으로 '41'을 표기한다.</p> <p>나.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p> <p>다.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p> <p>라.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p> <p>마.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p> <p>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묶음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p>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기관코드	구분코드	영업자코드	영업장코드	묶음날짜	일련번호																							
길이	1	2	10	3	6	2																							
타입	영문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코드	A	41	사업자등록번호	변동	변동	변동																							
4.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7조 관련)

1. 도축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2. 영 제2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포장처리된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하며, 포장 처리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3. 영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4.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반출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5.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개체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날짜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6.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7. 영 제6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제외한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매입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제2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도 된다)해야 한다.

4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소의 출생 등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사항	① 성명		② 위탁기관명
	③ 법인 명칭		④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⑥ 사육 소재지		
	⑦ 사육 개시일		
	⑧ 관리자 성명		⑨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출생 (수입·수출) 신고	⑪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⑫ 소의 종류 1. 한우 2. 젃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⑬ 암수 구분	1. 암	⑭ 부 개체식별번호
		2. 수	
			⑮ 모 개체식별 번호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신고	⑯ 양도·양수 구분 1. 양도 2. 양수		⑰ 개체식별번호
	⑱ 양도·양수 연월일 및 장소		
	⑲ 양도자·양수자 성명(상호)		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㉑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폐사신고	㉒ 개체식별번호		㉓ 폐사일
	㉔ 폐사 원인 1. 법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전화번호

위탁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유의사항

1. 출생 및 수입·수출신고는 ①~⑮란을 적습니다. ⑧~⑩란에는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⑫란의 소의 종류 및 ⑬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⑭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⑮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 및 양수 신고는 ①~⑤란과 ⑯~㉑란을 적습니다. 또한, ⑯란의 양도·양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⑦란과 ㉒란을 적고, ㉒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이 신고서는 소유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역을 적고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 한우: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에서 암소로 태어난 송아지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수소, 그 밖의 육용 소
 - 수입소: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신청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업체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면적	m ² 종업원 수

신청업종	[]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 식육판매업(수입산)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라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 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식육판매업(수입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를 표시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중 국내산과 수입산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에 √ 를 표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등 지정통지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업체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작업장 면적	m ²	종업원 수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국내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포장처리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판매업(수입산)		<input type="checkbox"/>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수입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1조제2항에 따라 포장 처리 신고 대상 사업자, 거래신고 대상 사업자 등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① 포장 처리일	②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⑤ 매입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한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무게는 해당 쇠고기 또는 부분육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 ⑤ 매입처는 쇠고기를 구입하였거나 포장을 의뢰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3조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대장,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신고 사유서(위 변경 사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노란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제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 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 조)

연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소유자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 이월								
누계(월계)								

유의사항

1. 연월일: 인수 또는 출고 발생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가.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나.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3. 수령자(소유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소의 소유자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 접수				처리 결과			
① 접수일	② 소유자명	③ 개체식별번호	④ 접수자	⑤ 재부착일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⑦ 부착자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유의사항

- ① 접수일: 소유자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소유자명: 소의 소유자등을 적습니다.
-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④ 접수자: 소유자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소유자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소유자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소유자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 적습니다.
-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발급신청서

() 도축장

발급 연월일	소의 종류	암수 구분	신청인			재발급 개체식별번호	재발급 사유	검사관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묶음번호	③ 부위명	④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⑤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유의사항

-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사용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② 묶음번호는 별표 7 또는 별표 12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 ③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④ 개체식별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쇠고기에 해당되는 모든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⑤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검역 시행장				
수입 품목	한글명	영문명		
	포장수량 (단위:)	순무게(kg, t)		
부위	부위명			
	수량 (단위:)	순무게(kg, t)		
수입 내역	화물관리번호			
	B/L번호			
	생산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B/L No)당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참조'라고 적고, 뒤쪽의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번호	부위명	수량(단위:)	무게(kg, t)

유의사항

-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 2. 부위명은 대부분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로 적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

[]양도 []양수 []수출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수입유통식별 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유의사항

- (출고·입고)처란은 양도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0”표하고, 수입유통식별쇠고기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 수입유통식별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 쇠고기에 표시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와 kg(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거래일(연월일)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BOX)	무게(kg, t)

유의사항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수입유통식별번호, 제품명(부위), 양도수량 및 양도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 가능)를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① 판매일·반출일	②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판매량 (kg, t)	⑤ 판매처·반출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②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본 업무 편람은 쇠고기 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제도 및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편람은 편람 제작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므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업무편람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쇠고기 유통이력제 법령 운용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전화 : 02-500-2076~2077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시조사과
전화 : 031-467-4393/4395

국내산 쇠고기 유통이력제 업무

- 축산물품질평가원
전화 : 031-467-4393/4395